

한일 범죄수사규칙(범) 비교 연구

한일 범죄수사규칙(법) 비교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경찰연구관 이 형 범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1
1.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	1
2. 일본의 범죄수사규범	2
제2절 연구방법	2
1. 일본 범죄수사규범 중심 연구	2
2. 중점 연구 내용	3
제2장 총칙	4
제1절 수사의 기본	4
1. 수사의 마음가짐	4
2. 피해자 보호	5
제2절 수사조직	6
1. 수사조직	6
2. 수사본부	7
제3절 지명수배	12
1. 일본경찰의 지명수배	14
2. 우리나라 경찰의 지명수배	14
3. 양국 지명수배 비교 및 개선점	16
4. 공개수사	17
제4절 검찰관과의 관계	21
1. 영장청구권 관련 양국의 헌법 조문	21
2. 형사소송법상 경찰과 검찰의 관계	23
3. 일본 경찰과 검찰관의 수사협력, 일반적 지시 등	28

제3장 수사의 개시	33
제1절 수사의 단서	33
1. 수사의 단서의 의의	34
2.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	35
제2절 수사의 착수	35
제3절 범죄현장	36
1. 현장임검	36
2. 부상자 구호	37
3. 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37
제4절 긴급배치	38
1. 경시청 긴급배치	39
2. 우리나라 경찰의 긴급배치	39
제4장 수사의 방법과 실행	42
제1절 임의수사	42
1. 임의수사	45
2.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등 참여	45
3. 영상녹화	45
제2절 체포	47
1. 통상체포	49
2. 긴급체포	49
3. 체포 후 수속	50
4. 구류청구권	50
제3절 강제수사(수색, 압수, 검증, 신체검사)	51
1. 통칙	51
2. 수색	52
3. 차압(압수)	53
4. 검증	54

5. 신체검사	55
제5장 송치와 송부	56
제1절 송치의무 및 불송치 특례	56
1. 송치의무	57
2. 불송치 특례	57
제2절 미죄처분제도	57
1. 경미범죄 처리제도	59
2. 미죄처분제도	59
3. 우리나라 경미범죄처리 제도(훈방을 중심으로)	61
제6장 특칙	62
제1절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63
1. 소년사건의 보도상 주의	64
2. 소년사건 송치 및 송부처	64
3. 경미사건의 처리	65
제2절 교통법령위반사건에 관한 특칙	65
제3절 국제범죄에 관한 특칙	66
1. 범죄수사규칙(범)상 영사관원신체불가침 규정	67
2. 영사관원의 신체불가침	67
3. 범죄수사규칙상 영사관원의 신체불가침 조문 개선점	68
제4절 군중범죄에 관한 특칙	68
제5절 폭력단 범죄에 관한 특칙	70
1. 폭력단대책법의 구성	71
2. 폭력단대책법의 기능	72
3. 제3조의 폭력단 지정	73
제7장 결론	76

<표 차례>

〈표 1〉 경시청조직도9
〈표 2〉 경시청수사1과 조직도11
〈표 3〉 일본경찰청폭력단지정현황(2009백서)75

<참고문헌>77

<부록>79

한일범죄수사규칙 章 대조표79
일본 범죄수사규칙 번역본8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1.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

경찰관은 현행 형사소송법¹⁾상 검사의 지휘를 받아 동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일선에서는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법무부령 제24호 1959.12.31, 제정, 제665호 2009. 5. 29, 일부개정)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57호 1991.7.31, 제정, 제526호 2008.7.22, 전부개정)에 따라 수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경찰 범죄수사규칙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등 수사 관련 법령의 내용을 비롯해 경찰의 수사활동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선 경찰관은 범죄수사규칙에 의거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범죄수사규칙을 통하여 경찰의 전반적인 수사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²⁾

1) 제196(사법경찰관리)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2) 전국경찰이 수사·형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관에게 범죄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수사경찰의 기본적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기준과 통일을 기하여 수사의 방법과 절차와 서식에 있어서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칙이다. 이연수·신현덕, 「범죄수사규칙」, 법률정보센터, 2005, 3면.

2. 일본의 범죄수사규범

일본의 범죄수사규범(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2호 1957. 7.11, 제정, 제24호 1998. 11. 10, 개정)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규칙으로서 일본경찰관의 수사활동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해방 후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계승한 것처럼³⁾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도 일본의 범죄수사규범을 계승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사단계에서 체포·구류수속, 신문,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등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남아 있고 운영에서 보면 더욱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한일 양국의 범죄수사규칙(법) 비교·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전반적인 수사시스템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며 양국의 범죄수규칙(법)의 보완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1. 일본 범죄수사규범 중심 연구

일본의 형사수속법 전문 번역 및 연구는 신동운 교수님의 「입문 일본 형사수속법」, 법문사, 2003)이 있으나 일본 범죄수사규범 전문(全文)을 번역한 연구논문 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일본 범죄수사규범에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문을 번역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그 전문은 부록으로 편철하였다.

3) 三井誠酒卷匡, 신동운 역,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법문사, 2003, 5면.

연구논문 전개 방식은 일본 범죄수사규범 중심으로 경찰수사 개시부터 검찰에의 송치까지의 과정을 조문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의 해당 조문과 양국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중점 연구 내용

이번 연구에서는 일본범죄수사규범을 중심으로 총칙, 수사의 개시, 수사의 방법과 실행, 송치와 송부, 특칙으로 나뉘어 해당 조문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아래 5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제31조 지명수배제도

둘째, 제4절 검찰관과의 관계

셋째, 제198조 미죄처분 제도

넷째, 제230조 영사상의 특권 등에 관한 특칙

다섯째, 제15장 폭력단 범죄에 관한 특칙

수배와 공조에서는 한일 지명수배의 종류와 신병처리 및 공개수사 제도에 관하여, 검찰관과의 관계에서는 제46조의 일반적 지시, 제48조의 일반적 지휘, 제49조의 보조를 위한 지휘에 관하여, 제198조 미죄처분 제도는 우리나라 경미범죄처리제도와 비교하여 알아보고, 제230조 영사상 특권 등에 관한 특칙에서는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 제238조 영사 등에 관한 특칙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 제238조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며, 끝으로 제15장 폭력단 범죄에 관한 특칙에서는 일본의 「폭력단대책법」 제3조 폭력단 지정과 제4조 폭력연합체의 지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 총칙

제1절 수사의 기본

1. 수사의 마음가짐

일 【제2조 (수사의 기본)】 ①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하고 사건을 해결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적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수사할 때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수사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한 【제3조(인권 보호)】 ①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사절차의 기본이념은 실제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있다고 하겠다. 수사절차는 공소제기 내지 공판절차에 대한 준비적 절차로서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는 기소, 불기소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되므로 형사재판의 공정을 위해서는 피의사건의 진상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경찰 개개인의 사건해결에 대한 집념과 의욕에 의해서만 구현된다.⁴⁾ 그러나 범죄만을 밝혀내려고 하는 집념과功名심은 자칫 무리한 수사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어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4) 이연수신현덕, 「범죄수사규칙」, 법률정보센터, 2005, 5-6면.

2. 피해자 보호

일 【제11조(피해자등의 보호 등)】 ①경찰관은 범죄수법, 동기 및 조직적 배경, 피의자와 피해자 등과의 관계, 피의자의 언동 그 밖의 상황으로부터 후에 피해자 등을 해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당해 피해자 등의 성명 그 밖에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알려서는 안 되며 필요에 따라 당해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자료제공자에게도 준용한다.

한 【제200조(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범죄신고자⁵⁾ 및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장을 준용한다.

최근에는 범인검거 업무 못지않게 범죄피해자 기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 범죄수사규범은 제10의 1(관계자 등에 대한 배려), 제10조의 2(피해자 등에 대한 배려), 제10조 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11조(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등)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은 기존 제10조의 1~3, 제11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범죄피해자의 보호업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8.7.22. 전면 개정시 제11장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신설하였다.

5)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2006.3.21.경찰청 훈령 제478호) 제3조에서는 “범죄신고자가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의 신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범죄신고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과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수사조직

1. 수사조직

일 【제16조(경찰본부장)】 경찰본부장(경시총감 또는 도도부현경찰경찰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행을 위해 범죄수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며 직원의 합리적 배치, 철저한 지도교양, 자재시설의 정비 등 수사태세의 확립을 도모하고 그 책임을 진다.

일 【제17조(수사담당부과장)】 형사부장, 경비부장 그 밖에 수사담당부과장은 경찰본부장을 보좌하고 그 명령을 받아 범죄수사를 지휘감독한다.

일 【제18조(경찰서장)】 경찰서장은 그 경찰서에 관한 범죄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시에 관해서 경찰본부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일 【제20조(수사주임관⁶⁾)】 ①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당해사건의 수사에 관해 수사주임관을 지명한다.

일 【제21조(수사원)】 ①경찰관은 상사의 명령을 받아 범죄수사에 임한다. ②경찰관 이외의 수사관계직원은 경찰관을 보조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6) 제20조(수사주임관) ②수사주임관은 제16조부터 전조까지(경찰본부장, 수사담당부과장, 경찰서장, 수사지휘)의 규정에 의한 지휘를 받아 당해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가. 수사하여야 할 사항 및 수사원의 임무분담을 정하는 것 나. 압수물 및 그 환가대금의 출납승인, 보관상황의 파악 다. 제3장 제5절(수사방침)이 규정에 의한 수사방침수립 르. 수사원에 대하여 수사상황보고의 요구 로. 유치시설에 유치된 피의자(제136조의 2의 현장검증시 주의) 제1항에서의 '유치피의자'의 동향의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유치주임관과 협의 브. 피의자신문 그 밖의 수하의 적정한 수행, 피의자 도주 및 자살 기타 사고방지에 관하여 수사원 교양 스. 전 각호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이 특별히 명령한 사항.

우리나라의 개정 전의 구 범죄수사규칙은 제2절 수사조직에 제15조(관할), 제16조(지방경찰청장 등), 제17조(수사주무과장), 제18조(경찰서장) 등 수사조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개정 범죄수사규칙은 제2절 수사지휘 및 보고로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다.

2. 수사본부

일 【제22조(수사본부)】 ①중요범죄 그 밖에 사건 발생시 특히 수사를 통일적이고 강력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한다. ②수사본부의 설치, 해산 및 수사본부장의 편성은 경찰본부장이 명한다. ③수사본부장은 명을 받아 수사본부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수사본부를 설치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본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그 외의 경찰서에서 당해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획득한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본부에 연락하여야 한다.

한 【제13조(수사본부)】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종합적인 수사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수사본부의 설치절차와 운영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③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의 수사본부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하여 “종합수사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종합수사지휘본부의 설치 대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는 신속히 수사본부에 연락해야 한다.

가. 우리나라 경찰과 일본 경시청 수사본부의 구성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본부)에서는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종합적인 수사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수사본부의 설치절차와 운영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③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의 수사본부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하여 “종합수사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종합수사지휘본부의 설치 대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라고 수사본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수사지휘본부운영규칙(1996. 6.9. 경찰청 훈령 제269호”에서 세부운영사항을 정하고 있다.

일본경찰청의 수사본부에 관하여 경시청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경시청의 수사본부는 특별수사본부와 공동수사본부(통상 수사본부) 등이 있는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가장 대규모의 수사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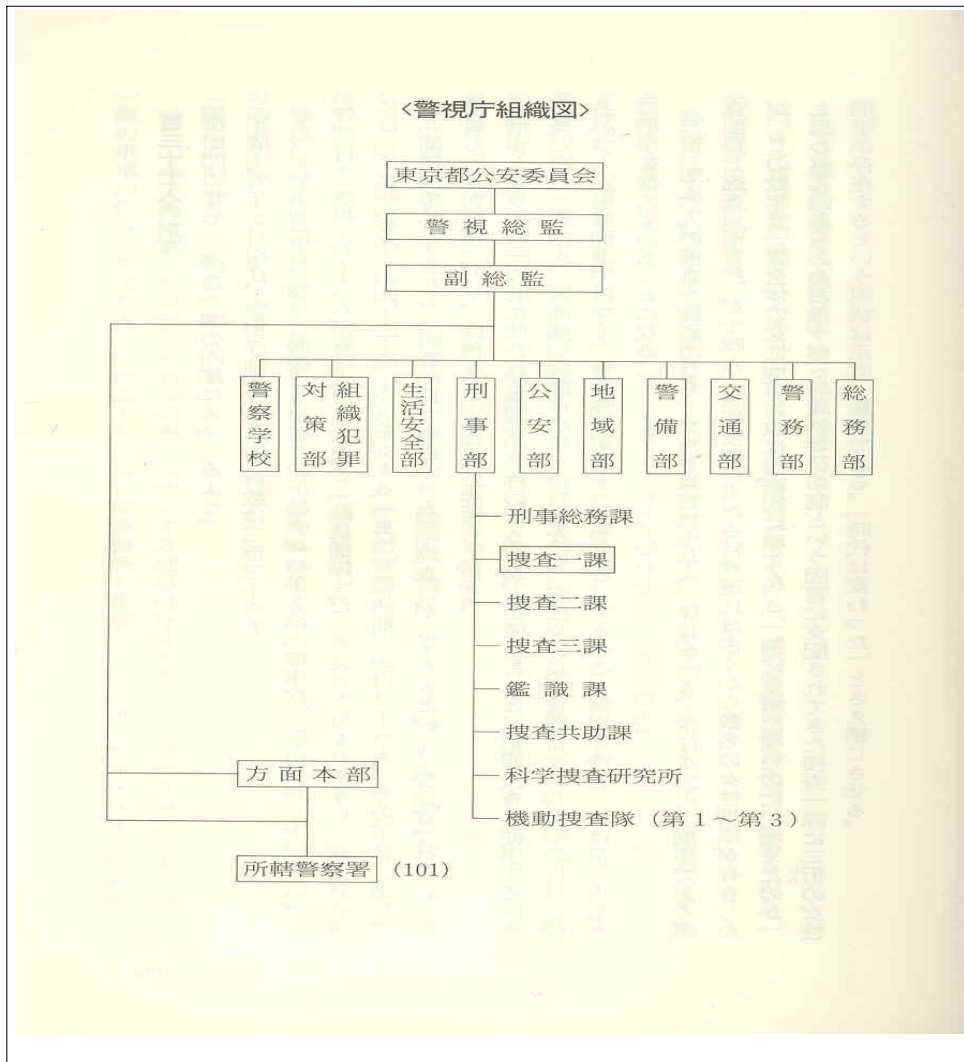
경시청 내규에 의하면 특히 중요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관하여 특별수사본부사건이라 지정하고 대규모의 수사원을 투입하도록 본부와 경찰서에 요구하고 있다. 주로 살인사건, 살인사건 이외에는 대규모 뇌물이나 총회꾼에 의한 이익공여사건 등이다.

특별수사본부의 장은 경시청의 형사부장이다. 실제 현장에 임장한 과장 등의 판단으로 특별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시청 형사부장에게 보고되고 특별수사본부설치의 수속을 밟게 된다.

특별수사본부는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설치된다.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서에 설치되면 경시청 수사1과 살인반이 관할 경찰서를 응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수사는 경시청 수사1과 살인반이 주도한다. 특별수사본부의 장은 형사부장이고 부분부장은 경시청 수사1과장과 해당 경찰서장이 된다.

특별수사본부는 경시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타 도부현(道府県) 경찰본부에서는 수사본부로 운영하고 있다.⁷⁾

〈표1〉 경시청조직도



7) 毛利文彦, 「警視庁 捜査1課 殺人犯」, 角川書店, 2005, 146-148면.

나. 경시청 형사부 수사1과의 구성

1) 경시청 형사부 구성

경시청 본부 형사부는 ①형사총무과 ②수사1과 ③수사2과 ④수사3과 ⑤기동수사대 ⑥감식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실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사1과는 살인, 강도, 유괴, 방화 등 강력범을 담당하고, 수사2과는 뇌물증수죄, 사기, 배임 등 지능범과 경제사범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사3과는 절도, 소매치기 등의 절도범, 기동수사대는 모든 사건 발생에서 초동수사의 담당, 감식과는 현장에서의 지문채취 등 증거물 수집이나 변사체 검시 등을 담당한다.

2) 경시청 수사1과의 구성

가) 구성 및 인원

실제 강력범 중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1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 기준으로 수사1과 형사 인원수는 336명이며, 수사1과 과장의 계급은 경시정(총경)이다. 그 밑에는 2명의 이사관이 있는데 계급 경시(경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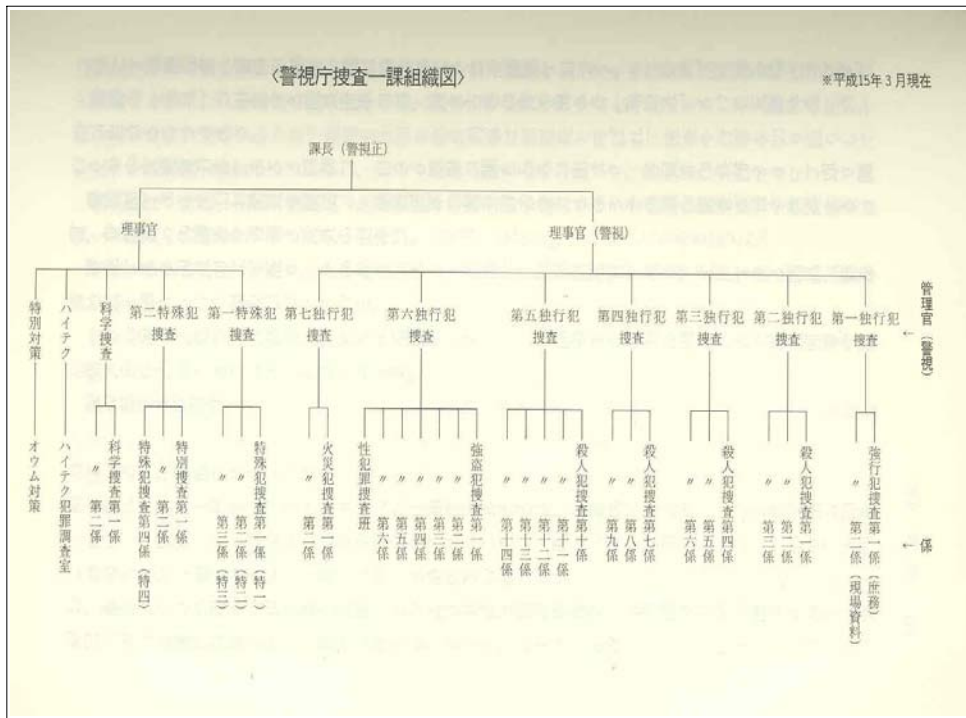
그 밑에는 16명의 관리관(과장보좌역)이 있고 계급은 역시 경시(경정)이다. 관리관의 아래에는 계장인 경부(경감)가 41명, 계장을 보좌하는 주임인 경부보(경위)가 133명 있고 그 밑에는 순사부장 111명, 순사 26명이 있다.

8) 기존 수사 4과는 신설된 「조직범죄대책부」에 편입되었다.

나) 수사1과의 실행단위인 계(係)

「살인범수사계」가칭 ‘살인반’이 17계, 강도수사를 담당하는 「강도범수사계」가 6계, 방화수사를 담당하는 「화재범수사계」가 2계, 유괴나 인질, 항공기납치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범수사계」가칭 ‘특수반’이 3계, 「성범죄수사반」이 1계, 「과학수사계」가 2계, 「하이테크범죄조사실」이 1계, 「옴(オウム教)대책」이 1계, 모든 수사1과 사건의 정보와 수사상황을 장악하여 창구역할을 하는 「현장자료반」이 1계, 수사경비나 급여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강행범수사 제1계」가 1계 총 35계로 구성되어 있다.⁹⁾

〈표2〉 경시청 수사1과 조직도



9) 毛利文彦, 앞의 책, 106-109면.

제3절 지명수배

일 【제31조(지명수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체포를 의뢰하고 체포후 인병인도를 요구하는 수배를 지명수배라 한다.

②지명수배는 지명수배서(별지양식 제2호)에 의하여 행한다.

③급속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서에 의해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받고 그 유효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④제29조(긴급사건수배)의 규정의 긴급사건수배에 의해 성명 등이 명확한 피의자의 체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긴급사건수배를 지명수배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일 【제32조(지명수배의 종별)】 ①별지명수배를 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신병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한다.

ㄱ. 제1종수배(신병의 호송을 요구하는 경우의 수배)

ㄴ. 제2종수배(신병을 인수하러 가는 경우의 수배)

②지명수배는 제1종 수배를 원칙으로 한다.

일 【제33조(지명수배의 계속)】 지명수배를 한 경우는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에 주의하고 유효기간경과 후에도 수배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유효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한 【제173조(지명수배)】 ①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180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②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아야 한다.

한 【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한 【제175조(지명수배자의 인수·호송 등)】 ①경찰관서장은 검거된 지명수배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호송을 위하여 미리 출장조사 체계 및 자체 호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배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거관서로부터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1. 일본경찰의 지명수배

일본경찰의 지명수배 대상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이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서에 의해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받고 그 유효기간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경찰은 제1종은 신병호송을 요구하는 수배, 제2종은 신병을 호송하러 가는 수배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제1종 수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검거관서 경찰관이 수배관서 경찰관에게 지명수배 피의자를 호송하여 인계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경찰이 수배관서 경찰관이 검거관서에 가서 지명수배 피의자를 인수하여 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 우리나라 경찰의 지명수배

가. 주체와 대상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은 일본 범죄수사규범과 달리 지명수배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우선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는 지명수배의 주체가 아니다. 실무에서는 사법경찰리가 본인 사건에 관하여 지명수배를 할 경위 경위급 팀장의 결재를 받아 지명수배하거나 경위급 팀원의 명의로 지명수배를 한다.

대상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180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이며 다만, 제

81조제1항에서 정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주로 실무에서 지명통보되어 지명통보가 된 사실을 통보받고 1개월 이내에 정해진 날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등의 사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해당한다.¹⁰⁾

나. 소재발견시 조치

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10) 제180조(지명통보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경찰관은 지명통보된 자(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한 관서(이하 "통보관서"라 한다) 등을 고지하고 발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57호 서식의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발견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통보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제174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호송

일본경찰은 검거관서에서 수배관서로 지명수배 피의자를 호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범죄수사규범 제32조 ②).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경찰은 검거관서에서 호송하는 게 아니라 수배관서의 수배경찰관이 호송하러 검거관서로 가는 게 원칙이다(범죄수사규칙 제175조②).

3. 양국 지명수배 비교 및 개선점

가. 지명수배 대상의 구체화

일본 범죄수사규범은 지명수배 대상자를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긴급사건수배자의 경우로만 간단히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은 법정형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와 지명통보대상자로 지명수배 필요에 의하여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그리고 긴급사건수배자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지명통보 규정의 핵심내용은 긴급한 경우에 외에는 지명통보 전에 반드시 법원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인권침해를 없애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나. 호송상 개선사항

지명수배자의 신병인수의 경우 우리나라 경찰은 원칙적으로 수배관서 경찰이 검거관서로부터 신병을 인수하게 되어 있으나 일본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과 달리 검거관서에서 원칙적으로 수배관서로 신병을 인도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은 타 시도에서 지명수배자가 검거되었을 때 수배관서 경찰이 타 시도까지 이동하여 신병을 인수하고 해당 경찰관서까지 호송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제177조에 의거 피의자를 조사한 후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다. 피의자에 관하여 사전 조사자료를 얻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고 호송한 경찰관이 피로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하므로 업무적으로 부담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찰과 같이 검거관서에서 수배관서로 신병을 호송하고 검거통보를 받은 수배관서 경찰관은 조사 전 사전준비를 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신속히 조사한 후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4. 공개수사

일 【被疑者の公開捜査について, 警察庁丁刑企発136号, 1998.10.1】

(피의자 공개수사에 관한예규)

한 【제178조 (공개수배)】 ①경찰청장은 지명수배·통보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할 수 있다.

②경찰관서장은 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수배할 수 있다.

③전항의 공개수배는 사진·현상·전단 그 밖의 방법에 의한다.

가. 일본경찰의 피의자 공개수사

1) 피의자 공개수사의 개념

일본 범죄수사규범에는 피의자 등의 공개수배나 공개수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본 경찰청은 피의자 공개수사에 대하여 경찰청 예규로 운영하던 ‘지명수배취급에 관한 예규’를 1998년 ‘피의자 공개수배에 관한 예규’로 제명변경과 함께 개정하였다.

동 예규에 따르면 “피의자 공개수사란 피의자의 발견, 검거 및 범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널리 일반에 공표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¹¹⁾고 정의하고 있다.

2) 피의자 공개수사의 대상

1. 죄종

- ㄱ. 흉악범죄
- ㄴ. 사회적 위험성 또는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 ㄷ. 재산범죄 중 악질 중요범죄
- ㄹ. 극좌폭력집단 등 반사회성이 강한 집단의 범죄로 조기검거 필요가 있는 것

2. 지명수배 피의자

3. 원칙적으로 성인 피의자

11) 이형범, “피의자 공개수사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과제, 2009, 23면.

3) 공개수사의 시기, 방법 등

1. 시기

피의자의 추적수사의 상황, 범죄반복의 가능성, 수사상의 지장 등을 종합적 검토 /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응해서 효과적인 시기 선정

2. 내용

정확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 피의자의 성명, 연령, 사진, 구체적 특징, 직업, 출생지, 범죄사실의 개요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 (필요최소한도로 공개) / 범죄사실의 개요를 공개하는 경우는 피의자 등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이하 「명예 등」이라 함)에 충분한 배려를 할 것(피의자의 소행, 경력, 정신적 장애, 가족관계, 참고인 등은 공개하지 말 것)

3. 방법

피의자의 성명공개 외에,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사진 등의 화상기록 그 외에 일러스트, 몽타쥬, 초상화, 음성기록 등을 활용하고, 보도기관, 인터넷, 포스터, 전단지 등 각종 홍보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방법을 선정 / 피의자의 성명 등 공개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함과 동시에 타당한 방법으로 행할 것(특히, 사진 등을 공개 시 피의자일 것을 충분히 확인)

4. 관리

경시청 및 도도부현경찰(방면)본부의 수배주무과장이 공개수사의 대상, 필요성,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수사주무과장은 극좌폭력집단 등 반사회성이 강한 집단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청(형사기획과) 및 관구경찰국(형사과)과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우리나라 경찰의 피의자 공개수사

1) 공개수배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 제178조는 공개수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개수사’ 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경찰과 같이 최근 범죄정세 변화와 공개수사가 결국은 메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사가 되므로 공개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피의자 공개수사의 근거

현행법상 피의자 공개수사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178조, 지명수배규칙 제9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동 규칙 제84조, 제8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경찰관 직무규칙 제86조 제1항은 “경찰관은 공개수배를 할 때에는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으로서 그 죄증이 명백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공개수배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 제78조 제2항은 공개수배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6조는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도 ① 죄증이 명백하고 ② 체포영장 발부된 자, ③ 공익상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동 규칙 제2항은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절 검찰관과의 관계

1. 영장청구권 관련 양국의 헌법 조문

일 【헌법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헌이 발부하고 이유가 되고 있는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일 【헌법 제35조】 ①누구든지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되고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헌이 발하는 각각의 영장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한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 【헌법 제16조 제2문】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헌법적 검토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헌법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게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해 두었다. 이는 경찰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 반드시 검사를 통하여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받

부받아야 하므로 자연히 경찰수사의 강제수사가 검사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반해 일본 헌법은 영장청구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영장발부권자만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헌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영장주의와 영장청구권자의 연관성

영장주의 본질은 영장을 요하는 수사상 강제처분의 허용여부에 대한 법관의 사법적 판단(원칙적으로 사전에 그리고)을 필요적으로 요구하는데 있다. 즉 영장을 요하는 강제처분권한이 법관에게 유보되어 있음이 영장주의 본질이다. 영장발부권한이 법관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장발부 주체를 법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보장의 핵심은 달성되는 것이다. 한국헌법처럼 영장청구의 주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헌법적 보장과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영장주의로부터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입법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¹²⁾

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다수의견

최근 헌법개정 논의와 관련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도 논란거리다. 서울대 조국(법학) 교수는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에서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한 것은(박정희 대통령 때인) 제5차 개헌 시기”라며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도 최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¹³⁾

12) 김선택,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규정 연구”,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2008, 10면.

2. 형사소송법상 경찰과 검찰의 관계

<p>일 형소법 【제189조(일반사법경찰직원과 수사)】 ①경찰관은 각각 다른 법률또는 국가공안위원회 혹은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지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②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p> <p>일 【제191조(검찰관·검찰사무관과 수사)】 ①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p> <p>②검찰사무관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p> <p>일 【제192조(수사에 관한 협력)】 검찰관과 도도부현공안위원회 및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p>
<p>한 형소법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p> <p>한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p> <p>③ 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p>

가. 일본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일본의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은 각각 독립한 수사기관이다. 양자는

13) 중앙일보, “다시 불거진 ‘검경 수사권’ 조정 법 개정안”, 2009. 11. 17, 10면, 종합.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검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따라서 사법경찰직원에게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 지시를 할 수 있다. 공소의 수행이 일본 검찰관의 주된 역할이므로 이 관점에서 수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일반적 준칙을 정하는 형태로 이 지시는 행하여 진다.

또한 일본의 검찰관은 스스로 수사를 행하는 경우에 그 관할구역에 따라서 사법경찰직원 일반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한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다. 수사의 방침이나 계획을 세워서 수사협력을 구하는 것이다.

일본의 검찰관이 제1차적 수사기관이 되어 수사를 행할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을 지휘하여 수사의 보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검찰관이 실제로 독자수사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 특정한 사법경찰직원을 상대로 행사되는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 지휘라고 한다. 여기에는 「그 관할구역에 따라서」라는 제한이 붙어 있지 않다.

사법경찰직원은 검찰관의 일반적 지시, 일반적 지휘 또는 구체적 지휘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르지 않으면 징계나 파면의 문제까지 일어나게 된다. 그렇지만 양자의 관계는 최근 법률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새롭게 검토되기 시작하고 있다.¹⁴⁾

나. 일본 경찰의 수사권한

경찰법 제2조는 경찰의 책무로서 “범죄의 예방·진입 및 수사, 피의자의 체포”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법에 범죄의 수사를 경찰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패전 이후 새로운 검·경관계가 정립됨에 따라 ‘공공의 안전과

14) 三井誠酒卷匡, 신동운 역, 앞의 책, 19-20면.

질서의 유지'를 완수하기 위하여 수사를 경찰의 고유의 직무로 보았기 때문이다.

경찰법은 수사를 경찰조직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사에 관한 권한 행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89조는 제1항에서 경찰관이 '사법경찰직원'으로서 직무를 행하는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2항에서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검찰관의 수사에 관하여는 제191조 제1항에서 "검찰관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관에 대하여는 모든 범죄에 관하여 그것을 인지한 경우에 수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검찰관에 대하여는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일본의 수사체계는 경찰관이 1차적 내지 본래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관은 경찰이 송치한 이후에 당해 사건을 대한 제2차적 내지 보충적 수사를 담당하는 기본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¹⁵⁾

다. 일본 검찰의 수사권한¹⁶⁾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은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9조 제2항의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과 보조의 "수사할 수 있다"라는 문언의 대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경찰직원은 제1차적 수사책임을 가지로 있으며, 검찰관은 보충적 수사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보충적 수사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권한에 있어서 2차적 내지 보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수사권한에 있어서 사법경찰에게는 부여도

15) 三井誠·酒卷匡, 신동운 역, 위의 책, 17면 ; 박창호·이동희 외3명,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4. 709면(재인용).

16) 박창호·이동희 외3명, 위의 책, 716면.

어 있지 않은 구류청구권, 제1차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청구권, 검시권 등이 부여되어 있으며 피의자 이외의 자의 진술조서에 대하여도 사법경찰직원이 작성한 조서보다 높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한국경찰과 검찰의 수사권한¹⁷⁾

1) 검사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수사권과 사법경찰관리에 게 수사를 명할 수도 있는 수사지휘권을 가진다. 이러한 검사의 수사권은 수사개시권·수사실행권·수사종결권을 포함한다.

2) 사법경찰관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지휘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수사기관의 지위에 관해서는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는 보조기관설이 있다(신동운 1999, 55; 차용석 1998, 230; 심희기 2001, 91; 송광섭 1994, 330; 송광섭·곽병선 1995, 70). 다른 하나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수사의 주체라는 수사주체설이 있다(백형구 2001, 372; 신양균 2000, 70).

3) 사법경찰리

사법경찰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수사의 보조기관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다만, 수사주체설의 입장에서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수사의 주체라고 한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보조기관

17) 김태현, “한국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연구-현행 경찰과 검찰의 수사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법무대학원, 2007.15-20면.

이라고 보는 보조기관설의 입장에서는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한다 하더라도 수사의 주체라고 할 수 없으며, 수사의 보조기관이라고 한다.

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현행법상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즉,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그 보조자이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53조). 따라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명하복이 관계로 수사활동을 하여야 한다(차용석 1998, 230).

마. 수사구조개혁 당위론

검사는 수사 전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수사현실에서 볼 때 소수인력을 가진 검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 지청의 지난 8월 1개월 동안(2004년 9월 기준), 검사 1인당 처리 사건은 4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공판관여검사는 3명으로 민·형사 단독, 합의부 공판검사는 일주일에 평균 하루 만나절을 재판에 묶여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동아닷컴 2004, 9월 7일 ; 이웅혁 2005a. 46).

실질적으로 수사업무의 시행에 있어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와 초동수사가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이황우 202, 361). 1998년 대검찰청 범죄부분에 따르면 경찰이 전체범

죄 약 150만 건의 96.7%를 실제 처리하고 있다. 경찰이 개시한 수많은 사건을 소수의 검사(98년 검사정원법상 1,137)가 수사를 지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경찰개혁위원회 실무연구팀 1999, 33-34). 한편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경찰 수사인력은 소속 경찰기관장과 검사의 이중적 지휘로 인한 중복 수사는 경찰의 조직적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중복 수사를 받게 되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과 인권침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박경식, 천대영 2001, 77-78). 이중수사의 문제점은 시민들의 인권침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사자 검시의 경우에도 발생단계부터 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되어 있어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사체 인도의 지연 등으로 유족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3. 일본 경찰과 검찰관의 수사협력, 일반적 지시 등¹⁸⁾

일 범죄수사규범

【제45조(수사관련 협력)】 ①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실행을 위해 미리 연락해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범죄사실의 개요 그 밖의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검찰관에게 연락해야 한다.

【제46조(일반적 지시)】 경찰관은 사법경찰직원수사서류기본서식레그 밖에 형소법 제19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찰관으로부터의 일반적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 수사하여야 한다.

18) 김중겸·배성인, 「기본자료편-일본경찰연구자료집(Ⅲ-1)-」, 치안연구소 제도개선기획단, 1998, 166-176면 참조.

일 【제47조(수사조정 신청)】 ①경찰관은 다른 사법경찰직원과의 사이에 수사조정에 관하여 형소법 제1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관의 일반적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경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본부장은 전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를 검찰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일 【제48조(일반적 지휘)】 형소법 제19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찰관으로부터 일반적 지휘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은 그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일 【제49조(보조를 위한 지휘)】 형소법 제1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검찰관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에 관하여 보조하도록 요구받았을 때에는 경찰관은 신속히 그 요구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 지시

1) 일반적 지시의 성격

일반적 준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는 법문(法文)의 자구(字句)로부터도 명확하듯이 개개인의 수사에 관한 지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살인사건, 某氏에 관련된 선거위반사건 등 특정된 개개의 수사에 관하여 지시를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물론, 개략적으로 “절도사건에 관하여는” 혹은 “사건 또는 무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라는 것같이 사건 자체는 일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어도 이러한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관에게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라면, 일반적 준

칙이라는 이름하에 특정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되어 경찰수사의 자주성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전체의 취지와 배치되게 된다.

2) 사법경찰직원 수사서류기본서식례(1961.6.1 개정)

일반적 지시권에 의거한 준칙으로서의 사법경찰직원 수사서류기본서식례이다. 이는 일반적 지시권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경찰관에 의하여 잘 준수되고 있다.

체포영장청구권, 체포수속서, 피의자진술조서, 변해(辨解)녹취서, 압수조서, 사건송치서 등의 소위 수사서류의 양식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총장의 명의로 지시되고 있다.

3) 미죄처분처리에 관한 지시

형사소송법 제246조 “사법경찰원은 범죄수사를 한 때에는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단 검찰관이 지정한 사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의 규정 중, 단서 부분에 의거한 사건불송치의 하나로서 어떠한 경우에 미죄처분이 허용되는가를 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검사총장이 정한 범위내에서 각 지방의 검사정이 정하는 바에 위임되어 있다.

4) 사법경찰직원 수사서류간이서식례

범행이 단순하고 증거가 명백한 특정사건에 사용되는 간이서식이 1963년 6월 1일에 정하여져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것도 그 성질상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사총장의 명의로 지시되었다.

나. 일반적 지휘

1) 수사조정을 위한 지휘

“검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게 대하여 수사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다” (형소법 제193조 2항)

이규정도 역시 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를 체포하라”라는 식의 개개의 수사활동의 실시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상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협력을 구하기 위하여”라는 말에서 보더라도 2이상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면 협력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말은 표현이 불확실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검찰관이 행하는 수사를 협력을 구하기”라는 의미가 아닌 것은 검찰관이 행하는 수사를 대하여 경찰관이 보조하는 경우가 별도무의족193조 제3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명백하다.

2) 사전지휘의 필요

일반적 지휘는 수사방침의 통일을 도모하는 등 조정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개의 사실이 일어난 후에 이루어져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일반적 지휘는 포괄적인 지휘이기 때문에 개별·구체적인 지휘는 아니다. 포괄적인 지휘는 금후에 대비하여 “사전에” 지휘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바, 이미 구체적으로 수사실행이 개시된 후에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실행의 각각의 경우에 관한 개별적인 지휘가 되어 버린다. 그러면 본 규정의 목적인 일반적 지휘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3) 병행수사의 지휘

이 규정은 2이상의 수사기관이 동일사건에 관하여 병행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경우에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아직 수사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경찰에 대하여 어느 사항의 수사를 명할 수 없다.

4) 수사중의 지휘

어느 경찰이 특정사건의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검찰관도 동일사건에 착수하여 일반적 지휘로서 “이 사건은 검찰관이 전적으로 수사할테니 경찰관은 손을 떼라” 든가 “지금부터 금후의 수사는 전부 검찰관이 지휘할테니 경찰관은 그 명을 받아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특정 사건의 지휘

이 규정은 2이상의 수사기관이 현실로 동일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이미 발생한 특정 사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다가올 총선거에서의 위반사건수사의 방침은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 지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 보조 명령

이 규정은 검찰관이 처음부터 직접 특정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이 검찰관의 권한을 보조명령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검찰관의 보조자로서는 검찰청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사무관이 있으나 검찰사무관은 무장·훈련 등의 면에서 볼 때, 체포·조사 등 수사활동에 적합하지 않

거나 그 인원수 면에서도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검찰과의 지휘를 받아 행하여야 할 수사 보조라고 함은 경찰관이 갖는 수사권에 의거한 보조, 바꾸어 말하면 경찰관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업무면에서의 보조를 가리킨다.

제3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

일 【제59조(단서파악의 노력)】 경찰관은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인터넷 정보, 익명의 신고, 풍설 그 밖의 사회현상에 주의, 직무질문 등으로 수사단서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 【제60조(수배유무 등의 조회)】 직무질문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 그 밖의 수배유무, 피해신고 유무, 감식자료 유무 등을 전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경시청 또는 도도부현경찰본부 또는 경찰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일 【제61조(피해신고서의 접수)】 ①경찰관은 범죄피해신고가 있을 때 범죄사건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피해신고서(별지양식 제6호)를 작성하게 하던가 아니면 경찰관이 대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피해신고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일 【제63조(고소, 고발 및 자수의 접수)】 ①사법경찰원은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하는 자가 있을 때 관할구역 사건을 불문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②사법순사는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하는 자가 있을 때 즉시 사법경찰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한 【제28조(범죄의 내사)】 ①경찰관은 범죄에 관하여,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어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

②내사의 착수 및 종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한 【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한 【제42조(고소·고발의 접수)】 ①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수사의 단서의 의의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자료 또는 범죄탐지의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단서과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¹⁹⁾

19) 이연수신현덕, 앞의 책, 120면.

2.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

변사자 검시·현행범인 체포·고소·고발·자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한하지 않고 불심검문·청원·밀고·투서·풍문·언론의 보도 등도 모두 수사의 단서로 되는 것이다.

제2절 수사의 착수

일 【제76조(착수보고)】 경찰관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수사의 착수에 앞서 절차를 거쳐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일 【제77조(착수에 관한 판단)】 수사의 착수에 관하여 범죄의 경중과 사정, 범인의 성격, 사건의 과급성,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판단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그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한 【제39조(범죄인지)】 ①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과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한 【제40조(범죄인지보고서)】 ①경찰관은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개정 범죄수사규칙은 기존 제2장 수사의 단서(단서의 파악, 변사자의 검시, 고소고발의 처리), 제3장 수사의 개시(수사착수, 수사자료, 범죄현장과 증거보존, 긴급배치, 수사방침)를 통합하여 단서별로 기술하고 긴급배치는 별도 규칙이 존재하여 절을 1개 조항으로 축소하였다.

참고로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함을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사건부에 사건을 처음 기재하게 되는 단계를 가리킨다. 즉 입건한 때부터 혐의자는 ‘피의자’로 불리게 된다.

제3절 범죄현장

1. 현장입검

일 【제84조(현장입검)】 ①경찰관은 현장입검이 필요한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수사전종원을 불문하고 신속히 현장에 입장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다른 수사주임관 기타 다른 사람에 의해 현장입검이 행하여질 때에는 철저히 현장을 보존하도록 한다.

한 【제155(현장입검)】 ①경찰관은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이하 “현장입검”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따로 수사주무관 그 밖의 자에 의한 현장입검이 행하여지게 될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상자 구호

일 【제85조(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 등)】 ①경찰관은 현장입검할 때에 부상자가 있는 경우 구호초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빈사의 중상자가 있을 때에 응급구호조치를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범인의 성명, 범행의 원인, 피해자의 성명, 목격자 등을 청취해 두어야 한다. ③전항의 중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한 【제156조(부상자의 구호)】 ①경찰관은 현장입검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그 자료부터 범인의 성명, 범행의 원인, 피해자의 주거, 성명, 연령, 목격자 등을 청취해 두어야 하고, 그 중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3. 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일 【제88조(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①경찰관은 보존할 현장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즉시 그 범위를 표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함부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한다. 이 경우에 현장 또는 그 부근에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성명, 주소 등을 명확히 해 두도록 한다. ② 현장에서 발견된 수사자료가 광선이나 비 등으로 변질, 변형 또는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것은 덮개를 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원상태를 보존하도록 한다.

일 【제89조(현장보존을 할 수 없는 경우)】 부상자 구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수사자료를 원상태대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 겨냥도, 기록 기타 방법으로 원상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한【제158조(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경찰관은 보존하여야 할 현장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입금지 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장 또는 그 근처에 있어서 배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성명, 주거 등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한【제161조(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수사자료를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 도면, 기록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긴급배치

일【제93조(긴급배치)】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범인검거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구역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동일하다.

일【제94조(긴급배치계획)】 ①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긴급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리 주도면밀히 긴급배치계획을 세워 소속 경찰관이 주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계획을 세울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경찰 기타 관계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일【제95조(긴급배치 방법)】 ①긴급배치는 전조의 계획에 근거하여 범인의 수, 차량이용의 상황, 흉기의 유무 기타 범죄의 규모와 양태를 고려하여 배치구역, 경찰관 수, 특히 경계해야 할 구역 또는 지점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②긴급배치를 할 때에 우선 교통의 요소(목배치) 기타 중요지점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사후 순차적으로 배치망을 좁히거나 넓히거나 하여 상황에 맞게 배치한다.

1. 경시청 긴급배치

경시청의 긴급배치에 관한 자료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관계로 毛利文彦(모리후미히코)의 「경시청 수사1과 살인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고자 한다.

통신지령본부가 지시하는 초동수사 중에서 전형적인 것이 긴급배치이다. 범인이 도주한 경우, 현장에서 가까운 관할서나 경시청관계부서가 그 범인체포를 위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활동이다. 그 지시를 하는 곳이 통신지령본부이다. 예를 들어 마루노우치서 관내에서 강도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범인이 자동차로 도주하였다는 정보가 110번 신고로 알게 되었다면 통신지령본부는 마루노우치서를 관할하는 제1방면의 각 경찰서나 인접하는 제2방면, 제6방면 각 경찰서에 “긴급배치발령! 마루노우치 관내 강도살인용의자 사건발생! 범인은 승용차로 도주중, 차번호는 1234!” 라고 지시한다. 제1, 2, 6방면 전 경찰관은 제복, 사복을 가리지 않고 전원 길거리로 나와 통신지령본부가 지령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범인 검색에 실시한다(위의 책, 129-130, 발췌, 연구자 정리).

2. 우리나라 경찰의 긴급배치

가. 수사긴급배치규칙(2007.10.30 훈령 제514호)

우리나라 개정 범죄수사규칙은 수사긴급배치 규칙이 별도로 있는 관계로 기존의 긴급배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경력동원 기준을 보면 갑(甲)호배치는 형사(수사)요원, 지구대·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의 100%를 동원하고 을(乙)호배치는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50% 동원한다.

나. 긴급배치종별 사건범위

1) 수사긴급배치규칙 별표 1

갑 호	을 호
1. 살인사건 강도·강간·약취·유인·방화살인 2명이상 집단살인 및 연쇄살인 2. 강도사건 인질강도 및 해상강도 금융기관 및 5,000만원이상 다액강도 총기, 폭발물 소지강도 연쇄강도 및 해상강도 3. 방화사건 관공서, 산업시설, 시장 등의 방화 열차, 항공기, 대형선박 등의 방화 연쇄방화, 중요한 범죄은익목적 방화 보험금 취득목적 방화 기타 계획적인 방화 4. 기타 중요사건 총기, 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 절도 조직 폭력사건 약취유인 또는 인질강도 구인 또는 구속피의자 도주	1. 다음 사건중 갑호이외의 사건 살인 강도 방화 중요 상해치사 1억원이상 다액절도 관공서 및 국가중요시설 절도 국보급 문화재 절도 2. 기타 경찰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2) 등 규칙 별표 2

구 분	지휘부 형태	지 휘 부 요 원	
		갑 호	을 호
경 찰 서 단 위	발 령 경 찰 서	서 장	형사(수사)과 장
	인 접 경 찰 서	형사(수사)과장	"
지 방 경 찰 청 단 위	발 생 경 찰 서	서 장	"
	기 타 경 찰 서	형사(수사) 과장	"
	지 방 경 찰 청	형사(수사) 과장	해 당 계 장
전 국 단 위	경 찰 서	서 장	형사(수사)과 장
	지 방 경 찰 청	형사(수사) 과장	해 당 계 장
	경 찰 청	수 사 국 장	해 당 과 장

제4장 수사의 방법과 실행

제1절 임의수사

일 【제99조(임의수사의 원칙)】 수사는 가능한 임의수사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일 【제100조(승낙을 구할 때 유의)】 임의수사를 할 때에 상대방에게 승낙을 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ㄱ. 승낙을 강제하거나 의심 받을 우려가 있는 태도 또는 방식은 취하지 말 것

ㄴ. 임의성이 의심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배려를 할 것

일 【제101조(탐문 그 밖의 내사)】 수사를 할 때에 탐문, 미행, 밀행, 잠복 등에 의해 가능한 많은 수사자료를 입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 【제102조(임의출두)】 ①수사를 위해 피의자 기타 관계자에게 임의출두를 요하는 경우 전화, 호출장(별지양식 제7호)의 송부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출두 일시, 장소, 용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출두인인에게 확실히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임의출두와 관련하여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피의자 기타 관계자에게 임의출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호출부(별지양식 제8호)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결과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한 제1절 출석요구**한 제2절 피의자신문 및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

한 【제59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신문 일시를 협의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은 변호인 참여 신청이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각호 생략)

⑥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당 의견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나 조사 중인 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의견 진술권을 줄 수 있다.

⑦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⑧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변호인 참여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 제3절 영상녹화

한 【제73조(영상녹화의 대상)】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한 【제74조(영상녹화의 범위)】 경찰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종료되어 진술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전 과정을 녹화하여야 하며, 조사의 객관적 정황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가 조사실에 입실하는 순간부터 영상녹화할 수 있다.

한 【제75조(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실 내의 대화는 영상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
2. 영상녹화를 시작하는 시각, 장소
3. 조사 및 참여 사법경찰관리 성명과 직급
4. 제60조 각 호에 규정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5.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6. 조사 종료 및 영상녹화를 마치는 시각, 장소

한 【제76조(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및 동의)】 ①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조 제1호의 내용을 고지하고 별지 제45호 서식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는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 임의수사

일본 범죄수사규범의 임의수사 관련 규정은 제99조(임의수사의 원칙), 제100조(승낙을 구할 때의 유의), 제101조(탐문 그 밖의 내사), 제102조(임의출두)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개정 범죄수사규칙은 일본 범죄수사규범과 유사한 제4장 임의수사 조문을 삭제하고 출석요구, 피의자신문 및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 영상녹화를 제3장 임의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등 참여

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피의자 신문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범죄수사규범에는 없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등 참여제도 도입에 훨씬 앞서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지침(1999. 10)을 하달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경찰의 한층 높아진 인권의식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3. 영상녹화

가.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2는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에게 고지 후,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으로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화 완료 후, 지체없이 피의자 앞에서 원본을 봉인 후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 조작 가능성 배제하였고 피의자 요구 시,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시 그 내용을 서면에 첨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법 제214조는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 가능하게 하였다.

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차등적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증거법 외적인 이유가 없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 등 적법절차도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영상녹화물 등의 객관적 방법을 활용하여 진정성립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권옹호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수사한 경찰관이 언제든지 법정에서 증언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조서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진술강요와 같은 피해자의 인권침해적인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것은 수사를 담당했던 담당자 등을 법정에서 불러내어 익명성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고문 등 인권적인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⁰⁾

20) 이동희, “사개추위안의 피의자 신문녹화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2006. 507면 이하 ; 안경옥,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치안논총 제25집, 2009, 175면(재인용).

제2절 체포

일 【제119조(통상체포의 청구)】 형소법 제199조에 의한 체포장(이하 ‘통상체포장’이라 한다.)의 청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公安위원회가 지정한 경부 이상의 계급에 있는 사법경찰원(이하 ‘지정사법경찰원’이라 한다.)이 책임을 지고 행한다. ②지정사법경찰원이 통상체포장을 청구할 때에는 절차를 거쳐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고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후 신속하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일 【제120조(긴급체포장의 청구)】 ①형소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체포장(이하 ‘긴급체포장’이라 한다.)은 지정사법경찰원 또는 당해 체포한 경찰관이 청구한다. 다만, 지정사법경찰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법경찰원인 경찰관이 청구하여도 무방하다. ②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처리는 절차를 거쳐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체포이유가 된 범죄사실이 없거나 그 사실이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해 진 경우 또는 신병을 유지하여 신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도 긴급체포장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 【제136조(체포수속서)】 ①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체포 연월일시, 장소, 체포시의 상황, 증거자료의 유무, 인치 연월일시 등 체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기재한 체포수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에는 현재 죄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여 마친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 또는 형소법 제21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죄를 실행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을 체포수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한 【제80조(영장에 의한 체포)】 ①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명수배 전산망의 조회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일 【제81조(긴급체포)】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전항의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며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통상체포

통상체포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재판관이 미리 발부한 체포장에 기하여 행하는 체포이다. 체포장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이며 검찰사무관 및 사법순사에게는 청구권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 일본 형소법의 제정 당시에는 사법경찰원 일반에게 그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청구(濫請求)의 폐단이 지적되어 1953년 의 부분 개정 시에 사법경찰원 가운데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지정한 경부(경감에 해당) 이상으로 한정하게 되었다.²¹⁾

지정사법경찰원이 통상체포장을 청구할 때에는 절차를 거쳐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고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후 신속하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범제119조 제②항).

2. 긴급체포

사법경찰직원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족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여 재판관의 체포장을 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행범 체포와 달리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즉시’ 체포장을 청구하는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 청구권자에게 통상체포와 같은 자격제한은 없고 사법순사라도 가능하다.²²⁾

21) 三井誠酒卷匡, 신동운 역, 앞의 책, 35면.

22) 三井誠酒卷匡, 신동운 역, 위의 책, 44면.

3. 체포 후 수속

사법경찰원은 사법순사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수취한 때 또는 자신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변해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사법경찰원이 피의자의 변해를 청취한 결과 유치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피의자가 신체구속을 당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피의자를 검찰관에 송치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²³⁾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 상 체포는 생략한다.

4. 구류청구권

한 【제85조 구속영장 신청】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할 염려가 있는 때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3) 三井誠酒卷匡, 신동운 역, 위의 책, 46-47면.

우리나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할 염려가 있는 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본 경찰에게는 구류(勾留)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구류(勾留)는 검찰관이 청구하여 재판관이 발부한 구류장(勾留狀)에 의하여 행하는 피의자의 신병 구속을 구류(勾留)라 한다. 또는 구류(拘留)는 징역이나 금고 등과 같이 형벌의 일종이다.

제3절 강제수사(수색, 압수, 검증, 신체검사)

1. 통칙

일 【제137조】 ①형사법 제2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 차압, 검증 또는 신체검사의 영장은 지정사법경찰직원이 청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사법경찰원이 청구해도 무방하다. ②전항의 영장을 청구할 때 절차를 거쳐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고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후 신속히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영장을 청구한 때에는 영장청구부에 청구의 수속, 발부 후의 정황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 【제138조(영장청구 시 주의)】 수색, 차압, 검증 또는 신체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수사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를 정해 수색할 만한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압수할 만한 물건, 검증할 만한 장소, 신체 또는 물건, 검증할 만한 신체의 부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절(節)의 수색, 압수, 검증은 일본 범죄수사규범과 우리나라 범죄 수사규칙과 대동소이하므로 일본 범죄수사규범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한다.

참고로 일본 경찰의 수색, 압수, 검증 영장 또는 신체수색 영장의 청구권자는 지정사법경찰직원이며, 앞에 서술한 통상체포청구권자는 경부 이상의 지정사법경찰원이다.

2. 수색

일 【제145조(제3자의 입회)】 ①수색을 함에 있어서 공무소 내 또는 타인이 거주하거나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 내 이외의 장소에서 수색을 할 때에도 가능한 제3자의 입회하에 수색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3자를 입회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다른 경찰관의 입회하에 수색을 하여야 한다.

일 【제146조(수색의 분담)】 수색을 할 경우에는 수색주임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수색 장소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각자의 분담을 정하고 주도면밀하게 수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 【제149조(수색조서)】 ①수색을 한 경우 수색상황을 명확하게 하고 수색조서(피의자수색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색시 처분을 받은 자에게 수색허가장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못한 경우, 여자의 신체를 수색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여 성년의 여자를 입회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3. 차압(압수)

일 【제151조(영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09조(임의제출물의 영치) 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110조 제1항부터 제117조까지(유류물의 영치, 원상태 대로의 영치, 폐기 등의 처분, 폐기처분 등과 증거와의 관계, 수세관리 등과의 연락, 영치물의 환부 등의 상대방 조사, 영치조서에의 기재, 증거물건보존부)의 규정은 차압을 할 때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 제2항 및 제116조 중 「영치조서」는 「차압조서」로 대신한다.

일 【제152조(수색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5조(제3자의 입회), 제147조(집행중의 퇴거 및 출입금지) 및 제148조(수색중지의 경우의 조치)의 규정은 차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일 【제153조(수색조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9조(수색조서) 제2항의 규정은 차압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일 【제154조(차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범죄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그 물건에 대하여 차압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함과 동시에 은닉, 산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본 범죄수사규범의 ‘차압(差押, 差し押え)’이란 용어는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의 압수에 해당한다.

4. 검증

일 【제155조(검증)】 범죄현장 기타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검증에 관하여 사실발견을 위하여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일 【제156조(사체의 검증 등의 주의)】 ①사체의 검증, 분묘의 발굴 등을 함에 있어서 예(禮)를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통지하고 가능한 입회시키도록 한다. ②전향의 경우에 있어서 사체의 피복, 부착물, 분묘내의 매장물 등이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차압허가장에 의한 차압을 하여야 한다.

일 【제157조(실황견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104조 제3항부터 제106조까지(실황견분, 실황견분조서기재상의 주의, 피의자의 진술에 기초한 실황견분)의 규정은 검증을 할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실황견분조서」는 「실황견분 또는 신체검사조서」로 대신한다. ②검증을 할 경우에 있어서 다른 처분과 동시에 신체검사를 할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조사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검증조서에 신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일 【제158조(수색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제145조(제3자의 입회), 제147조(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제148조(수색중지의 경우의 조치) 및 제149조(수색조서) 제1항의 규정은 검증에 대하여 제149조(수색조서) 제2항의규정은 검증조서의 작성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49조 제1항의 규정중 「수색조서」는 「검증조서 또는 신체검사조서」로 대신한다. ②신체검사 시 부득이하게 입회인을 참가시키지 못한 때에는 그 사정을 신체검사조서에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5. 신체검사

일 【제159조(신체검사와 관련한 주의)】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서 형소법 제2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관이 붙인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 이외에 성별, 연령, 건강상태, 장소적 관계 기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온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일 【제160조(의사 등의 조력)】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일 【제161조(부상자의 신체검사)】 부상자의 부상부위의 신체검사는 그 상황을 촬영 등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가능한 단시간에 종료하도록 한다.

일 【제162조(신체검사 거부 시 조치)】 형소법 제2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거부한 자에 대한 과료처분 또는 거절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처분을 재판소에 청구하는 때에는 과료처분등청구서를 작성해서 하여야 한다.

참고로 일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찰관, 검찰사무관, 사법경찰직원은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차압,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신체의 검사는 신체검사영장(身體檢査令狀)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2조 제7항은 “신체검사를 거부한자를 과료(過料)에 처하거나 또는 이에 배상을 명하여야 할 때에는 재판소에 그 처분을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장 송치와 송부

제1절 송치의무 및 불송치 특례

일 【제193조(송치 및 송부의 지휘)】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송치 또는 송부의 수속을 밟을 때에는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일 【제194조(관련사건의 송치 및 송부)】 제11장(소년사건에 관한 특칙)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사건은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송치 또는 송부한다.

일 【제195조(송치서 및 송부서)】 사건을 송치 또는 송부할 때에는 범죄의 사건 및 정상 등에 관한 의견을 붙인 송치서 또는 송부서를 작성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한다.

일 【제197조(여죄의 추송치(부))】 여죄의 추송 또는 송부 후에 해당 사건에 관한 피의자에 관하여 여죄를 발견한 때에는 검찰관에게 연락하고 신속히 수사하여 추송치(부)하여야 한다.

한 【제189조(송치)】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1. 송치의무

일본의 검·경관계에 관한 국내문헌은 경찰은 사건송치와 관련하여 단순히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신병과 기록 일체를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하고(형소법 제203조), 또한 자신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제246조)는 내용을 적시함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인다.²⁴⁾ 그러나 일본경찰의 사건송치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불송치 특례가 있으며 실무상 사건성 없는 사건에 대한 불송치 관행이 존재한다.

2. 불송치 특례

사법경찰원은 범죄의 수사를 행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할 의무가 있다(형소법 제246조) 그러나 제246조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고소·고발사건을 제외한 ‘검찰이 지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미죄처분을 할 수 있고, 소년법상의 소년범의 송치에 관한 특례가 있다.

제2절 미죄처분제도

일 형사소송법

【제246조(법경찰원으로부터 검찰관에게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원은 범죄의 수사를 한 때에는 이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검찰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박창호·이동희 외3명, 앞의 책, 742면.

일 【제198조(미죄처분이 가능한 경우)】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범죄 사실이 극히 경미하고 검찰관으로부터 송치의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고 사전에 지정된 경우에는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 【제199조(미죄처분의 보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그 처리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매일 일괄하여 미죄처분사건보고서(별지양식 제19호)에 의해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 【제200조(미죄처분 시의 처리)】 제198조(미죄처분이 가능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 ㄱ. 피의자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하고 장래에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경고할 것
- ㄴ. 친권자, 고용주 기타 피의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자를 대신할 자를 출석 요구하여 장래에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를 주고 각서를 징구할 것
- ㄷ.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사죄 기타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것

한 【경찰업무편람 2-12. 즉결심판청구사무

가. 훈방대상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피해자가 없는 경우로서

- (1) 연령상 - 60세이상 고령자, 미성년인 초범자
- (2) 신체상 - 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 (3) 신분상 -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고 정상을 참작 할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4) 죄질상 - 공무방해 또는 상습범이 아닌 자,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
- (5) 기타 경찰서장이 특히 훈방할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1. 경미범죄 처리제도

우리나라 경찰과 일본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미한 범죄사건이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사건송치, 공소제기, 정식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다. 간이절차에 의한 신속한 재판진행은 피고인 측의 시간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조속히 감소시킨다는 장점을 갖는다.²⁵⁾

우리나라의 경우 즉결심판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는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이 즉결심판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경찰업무편람 2-12)를 정하여 경미사범에 대하여 훈방조치를 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즉결심판청구권이 없고 미죄처분제도에 의하여 경미사범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조사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극히 경미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송치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미리 지정한 것은 송치를 하지 않고 경찰에서 종국처리하고 미죄처분사건 월보만 검찰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2. 미죄처분제도

가. 법적근거

일본형사소송법 제246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단서규정, 범죄수사

25) 조국, “경찰 ‘보호조치’ 와 ‘훈방조치’ 의 법적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2003, 49-50면.

규범 제198조와 제199조 등이다.

나. 요건

검사장 명의 ‘송치절차 특례에 관한 건’에 규정되어 있는데 ①피의자가 성인일 것 ②범죄사실이 경미할 것 ③통상체포(체포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한 사건 또는 고소고발, 자수사건이 아닐 것 ④죄종 범정(犯情)이 다음에 해당 될 것 등이다. ④의 요건은 절도, 사기, 횡령죄 및 이에 준하는 장물죄의 경우는 피해액이 근소할 것(1990.12.부터 1만엔 이하), 범정이 경미할 것,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것, 피의자가 소행이 불량하지 않을 것, 우발적 범행일 것,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이며, 도박죄의 경우는 득실의 목적인 재물이 극히 근소할 것, 범정이 경미할 것, 공범자 모두가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불명 등의 이유로 증거품의 환부가 불가능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24시간 이상 피의자를 유치한 경우, 고소·고발·자수사건인 경우는 반드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²⁶⁾

다. 미죄처분시 조치사항

일본 범죄수사규범 제200조(미죄처분시 처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피의자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하고 장래에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경고할 것 ②친권자, 고용주 기타 피의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자를 대신할 자를 출석 요구하여 장래에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를 주고 각서를 징구할 것 ③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사죄 기타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것

26) 김중구, 형사사법개혁론, 법문사, 1998, 561면; 조국, 위의 논문, 42-43면(재인용).

3. 우리나라 경미범죄처리 제도(훈방을 중심으로)

가. 훈방권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즉결심판법 제3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의 기소편의주의의 규정에 대응하는 즉결심판법상 훈방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즉결심판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의 기소편의주의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찰서장의 훈방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나. 훈방대상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선의 정이 현저하며 피해자가 없는 경우로서 ①연령상 60세이상 고령자, 미성년인 초범자 ②신체상 - 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③신분상 -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고 정상을 참작 할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④죄질상 - 공무방해 또는 상습범이 아닌 자,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 ⑤기타 경찰서장이 특히 훈방할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다. 절차

지구대 등으로부터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등 관련서류만 인계받은 경우 생활안전과장(야간·공휴일 : 상황실장)이 서류에 의한 예심을 실시하여 훈방, 통고처분 또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예심결과를 전화 등으로 피의자에게 통지한다.

제6장 특칙

【한일 범죄수사규칙(법) 특칙 비교】

한 범죄수사규칙(12장)	일 범죄수사규범(11-15장)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성폭행사건에 관한 특칙	교통법령위반사건에 관한 특칙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국제범죄에 관한 특칙
국제범죄에 관한 특칙	군중범죄 관한 특칙
다중범죄에 관한 특칙	폭력단범죄에 관한 특칙

우리나라의 개정 전 범죄수사규칙상 특칙은 일본 범죄수사규범상 특칙과 같이 각각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범죄수사규칙은 특칙의 장(章)을 별도로 신설하고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과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일본 범죄수사규범상 특칙 중 눈에 띄는 것은 폭력단범죄에 관한 특칙이다. 일본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5.15. 법률 제77호, 이하 「폭력단대책법」이라 한다)이 별도로 있는데, 폭력단범죄에 관한 특칙에서 자세히 소개하기 한다.

이번 제6장의 특칙에 관한 설명은 일본 범죄수사규범상 위의 5가지 특칙의 조문위주로 기술하기로 한다.

제1절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일 【제203조(소년사건수사의 기준)】 소년사건수사에 관하여 가정재판소에서의 심판 그 밖의 처리를 염두해 두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는 자세로 임하여 한다.

일 【제210조(소년사건 송치 및 송부처)】 ①소년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그 범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송치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②송치 또는 송부 시 그 소년피의자에 대하여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검찰관에게 송치 또는 송부한다.

일 【제211조(관련사건의 송치 및 송부)】 ①다른 피의자 사건과 관련된 소년사건의 송치 또는 송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ㄱ. 성년사건과 관련된 소년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각각의 기록을 송치 또는 송부할 것. 다만, 소년사건에 관련되는 서류가 성년사건에 대하여도 필요한 때에는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할 것

ㄴ. 수개의 소년사건이 관련되고 이를 검찰관에게 송치 또는 송부할 때에는 각각의 기록으로 할 필요는 없음

ㄷ. 소년사건이 성년사건과 관련되거나 수개의 소년사건과 관련되어 한쪽의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부 또는 송치하고 다른 한쪽의 사건을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쪽의 사건에 관한 서류가 다른 한쪽의 사건에서도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에게 송치 또는 송부하는 사건의 기록에 다른 한쪽의 사건과 관련되는 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할 것

1. 소년사건의 보도상 주의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타인에게 띄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문의 언동에 주의하는 등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임하여 그 심정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소년의 신상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일본 범죄수사규범 제209조는 “소년범죄에 관하여 신문 기타 보도기관에 발표하는 경우에도 당해 소년의 성명 또는 주거를 고지하지 말고 그 밖에 당해 소년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며²⁷⁾ 소년범죄 수사시 소년의 신상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년사건 송치 및 송부처

소년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그 범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송치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동 규범 제210조 1항). 송치 또는 송부 시 그 소년피의자에 대하여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검찰관에게 송치 또는 송부한다(동 규범 제210조 2항).

27) 우리나라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 연령 · 직업 · 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전문개정 2007.12.21】

3. 경미사건의 처리

일 【제214조(경미사건의 처리)】 ①수사한 소년사건에 관하여 그 사실이 매우 경미하고 범죄원인과 동기, 해당 소년의 성격, 행상, 가정 상황 및 환경 등으로 볼 때 재범가능성이 없고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며 검찰관 또는 가정재판소로부터 사전에 지정된 경우에는 피의소년 마다 소년사건간이송치서 및 수사보고서(가정재판송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양식 제22호. 단,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정이 소년의 교통법령위반사건의 수사서류의 양식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도도부현경찰의 경찰본부장이 관할 가정재판소와 협의하여 그 특례에 준하는 별도의 양식을 정한 때에는 그 양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신상조사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일괄하여 검찰관 또는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의 경우에는 제200조(미죄처분시의 처리)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절 교통법령위반사건에 관한 특칙

일 【제218조(준거규정)】 도로교통법(1960년 법률 제105호)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이하 「교통법령」이라 한다.)의 위반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것 외에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른다.

일 【제219조(신병구속에 관한 주의)】 교통법령위반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사안의 특성을 감안하여 범죄사실을 현인(現認 : 현장에서 확인)한 경우에도 도망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의자를 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국제범죄에 관한 특칙

일 【제230조(영사상의 특권 등에 관한 특칙)】 ①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 자의 신체불가침특권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ㄱ. 본무영사관(本務領事官)(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며 그 자의 대하여 재판관이 미리 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본무영사관 및 제3항이 규정하는 영사관은 제외한다.)

ㄴ. 영사전서사(領事傳書使)(당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의 영사전서사에 한한다.)

②다음에 규정된 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그 자가 영사임무의 수행을 함에 있어서 행한 행위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에는 그 자가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ㄱ. 영사관(領事官)(다음 항에 규정된 영사관은 제외)

ㄴ. 영사기관(총영사관, 영사관, 부영사관 또는 대리영사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기술직원(우리나라 국민인 자 또는 우리나라에 통상 거주하는 자는 제외한다.)

한 【제238조(영사 등에 관한 특칙)】 ①경찰관은 임명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주재의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구속 또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무소는 당해 영사의 청구나 동의를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수사규칙(범)상 영사관원신체불가침 규정

일본 범죄수사규범은 영사관원의 신체불가침과 관련하여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며 그 자의 대하여 재판관이 미리 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영사관원에 대하여는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은 영사관원신체불가침 특권과 관련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²⁸⁾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²⁹⁾상의 신체불가침 특권의 내용을 보면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 본문).” 규정하여 외교관에 대한 절대적 신체불가침을 명시하고 있으나,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신체불가침이 침해될 수 있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1조 제1호).” 라고 규정하여 영사관원의 신체불가침 특권은 절대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영사관원의 신체불가침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1조(영사관원의 신체의 불가침)

1.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체포되거나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28)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1961.4.18 채택, 1964.4.24 발효, 1971.1.27 한국발효)

29)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1963.4.24 채택, 1967.3.19 발효, 1977.4.6 한국발효)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영사관원은 절대적인 신체의 불가침의 특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영사관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법관에 의한 영장이 발부된 경우이면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다.

참고로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영사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동 협약 제43조 제1항).

3. 범죄수사규칙상 영사관원의 신체불가침 조문 개선점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제조약상 외교관과 영사관원 외교적 특권과 불가침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일본 범죄수사규범과 달리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은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술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도 일본 범죄수사규범 제230조와 같이 영사관원의 신체불가침 특권의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제4절 군중범죄에 관한 특칙

일 【제240조(심적대비)】 군중범죄수사에 대하여는 항상 일반사회의 정세 및 군중범죄의 주체가 될 우려가 있는 단체, 집단 등의 실태와 그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중범죄수사가 적확하게 행하여지도록 심적대비를 하여야 한다.

일 【제241조(군중범죄수사의 중점)】 군중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실행 행위자만 그치지 말고 주모자, 모의참여자 그 밖의 사건의 배후에 있는 공범관계자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 【제241조(군중범죄수사의 중점)】 군중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실행 행위자만 그치지 말고 주모자, 모의참여자 그 밖의 사건의 배후에 있는 공범관계자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 【제242조(현장에 있어서의 체포)】 군중범죄의 현장에서 그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세력, 정세의 추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체포의 시기, 방법과 범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휘관의 통제하에 행하여야 한다.

일 【제243조(감식활동의 주의)】 군중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행상황 그 밖의 현장의 상황을 명백히 하고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하는 등 증거의 수집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일 【제244조(체포시의 주의)】 ①군중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 있어서 체포한 경찰관은 각각 자기가 체포한 피의자에 관하여 그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범죄사실의 개요, 체포시간, 장소와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 해두어 사후의 신문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직후에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과 함께 촬영해 두는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 한다. ③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당해 피의자와 관계가 있는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피의자와 압수물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들을 함께 촬영하는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 한다.

일 【제245조(통보 등의 방지)】 군중범죄의 피의자를 다수 동시에 체포한 경우에 있어서 통보, 탈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분산유치 기타의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 【제248조(피의자의 신문)】 군중범죄이 피의자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특히 조사하는 경찰관 상호간에 연락을 긴밀하여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폭력단 범죄에 관한 특칙

일 【제248조(심적대비)】 ①폭력단에 대하여는 평소 그 조직의 실태와 동향과 그 활동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폭력단범죄의 수사가 적확히 행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폭력단범죄수사에 대하여는 폭력단대책에 관련되는 점을 염두 해두고 이에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일 【제249조(폭력단범죄수사의 중점)】 폭력단범죄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실행해위자만 그치지 말고 폭력단 두목 그 외 간부 등의 당해사건에 관여의 유무에 관하여도 확실히 수사하고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 【제250조(자료의 수집관리)】 폭력단의 시찰내탐 그 외 폭력단범죄의 수사에 의한 유무형의 자료수집과 관리는 조직적으로 하여야 한다.

일 【제251조(진술조서의 기재사항)】 ①폭력단범죄의 피의자진술조서에는 제178조(진술조서의 기재사항)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ㄱ. 피의자에 관련된 폭력단 명칭, 조직 및 활동의 실태

ㄴ. 피의자가 당해폭력단의 구성원인 때에는 당해폭력단에 있어서의 지위 그 밖에 피의자와 당해폭력단관의 관계와 당해폭력단에 관련한 피의자의 활동실태

ㄷ. 당해범죄의 당해폭력단에 관련된 조직적 배경

②폭력단범죄의 참고인진술조서에는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외에 당해폭력단의 활동실태, 당해범죄의 당해폭력에 관련된 조직적 배경 등을 가능한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 【제252조(부당한 행위의 보고)】 폭력단의 시찰내담 그 외에 폭력단범죄수사의 결과,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졌을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그 외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그 사실을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폭력단대책법의 구성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제2장 폭력적 요구행위의 규제 등

제1절 폭력적 요구행위의 금지 등(제9조- 제12조의 6)

제2절 부당한 요구에 의한 피해의 회복 등을 위한 원조(제13조, 제14조)

제3장 대립항쟁 시 사무소 사용 제한(제15조)

제4장 가입의 강요 규제 기타 규제 등

제1절 가입의 강요 규제 등(제16조-제28조)

제2절 사무소 등에서 금지행위 등(제29조, 제30조)

제3절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해규제(제30조의 2-제30조의 4)

제4절 폭력행위 찬양 등의 규제(제30조의 5)

제5장 지정폭력단의 대표자 등의 손해배사책임(제31조-제31조 3)

제6장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의 방지 및 이에 의한 부당한 영향의 배제를 위한 민간활동의 촉진(제32조-제32조의 3)

제7장 잡칙(제33조-제45조)

제8장 벌칙(제46조-제50조)

부칙

2. 폭력단대책법의 기능³⁰⁾

가. 기능

「폭력단대책법」은 ‘폭력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에 대한 법적통제의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폭력단은 이탈리아에서 처음 구성되어 미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등에서 범죄조직의 대명사로 불리는 ‘마피아(Mafia)’와 중국에서 조직되어 동남아에서 범죄조직의 대명사가 된 ‘삼합회(三合會)’처럼 일본의 범죄조직의 대명사인 “야쿠자(やくざ)”를 의미한다.

이 법률의 일본에서의 기능은 이들이(暴力團) 행하는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집단의 유지조건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률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이들 집단에 의한 ‘폭력적 요구행위’의 통제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폭력단원으로 활동하거나, 폭력단원이 되려고 하는 자 또는 폭력단원이었지만 폭력단을 탈퇴하여 새로운 인생을 원하는 자에게 법적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나.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폭력단대책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법문화는 과거 일제의 강점에 의한 부당한 국가침탈의 결과였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현재에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국가로서 문화적 영향을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또한 조직범죄의 유형이나 범죄조직의 교류까지도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많다고 볼 때 「폭력단대책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0) 정지운, 「폭력단대책법이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09, 18-19면.

3. 제3조의 폭력단 지정

가. 폭력단의 지정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폭력단이 “명목상의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폭력단이 폭력단원이 당해 폭력단의 위력을 이용하여 생계의 유지, 재산의 형성 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해 폭력단의 위력을 그 폭력단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당해 폭력단의 위력을 그 폭력단원이 이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실질상의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폭력단을 그 폭력단원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 등을 할 것을 조장할 우려가 큰 폭력단을 지정한다(제3조).

나. 폭력연합체의 지정(제4조).

공안위원회는 지정폭력단을 제외한 폭력단이 “당해 폭력단을 구성하는 폭력단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지정폭력단일 것, 당해 폭력단의 폭력단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지정폭력단의 대표자 동일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폭력단을 지정폭력단의 연합체로 지정한다.

다. 지정공시(제7조)

1) 지정의 관보공시

공안위원회는 지정을 할 때에는 지정에 관계되는 폭력단의 명칭 기타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제1항).

2) 지정의 효력발생

지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제2항).

3) 지정폭력단의 대표자 등에 대한 통지

공안위원회는 지정을 한 때에는 당해 지정에 관한 지정폭력단 등을 대표하는 자 및 그를 대신할 적절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한 취지, 기타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4) 공시사항 변경의 공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안위원회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제4항).

라. 지정의 유효기간 및 취소(제8조)

1)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은 3년간 효력이 있다(제1항)

2) 지정폭력단의 지정취소 사유(제2항)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제1호), 제3조(폭력단의 지정) 각 호 또는 제4조(폭력단연합체의 지정)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될 때이다(제2호).

〈표3〉 일본경찰청 폭력단 지정현황(2009백서)

表 2-1 指定暴力団の指定の状況 (平成21年5月1日現在)

番号	名称	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	代表する者	勢力範囲	構成員数	初回指定年月日	効力期限(指定回数)	代紋
1	六代目山口組	兵庫県神戸市灘区篠原本町4-3-1	篠田 建市	1都1道2府41県	約20,300人	平成4年6月23日	平成22年(6回)	
2	稲川会	東京都港区六本木7-8-4	角田 吉男	1都1道19県	約4,800人	平成4年6月23日	平成22年(6回)	
3	住吉会	東京都港区赤坂6-4-21	西口 茂男	1都1道1府16県	約6,100人	平成4年6月23日	平成22年(6回)	
4	四代目工藤會	福岡県北九州市小倉北区神岳1-1-12	野村 悟	5県	約770人	平成4年6月26日	平成22年(6回)	
5	三代目旭琉会	沖縄県那覇市首里石嶺町4-301-6	翁長 良宏	県内	約260人	平成4年6月26日	平成22年(6回)	
6	沖繩旭琉会	沖縄県那覇市辻2-6-19	富永 清	県内	約370人	平成4年6月26日	平成22年(6回)	
7	六代目会津小鉄会	京都府京都市下京区東高瀬川筋上ノ口上る岩滝町176-1	馬場 美次	1道1府1県	約660人	平成4年7月27日	平成22年(6回)	
8	五代目共政会	広島県広島市南区南大河町18-10	守屋 輔	県内	約330人	平成4年7月27日	平成22年(6回)	
9	六代目合田一家	山口県下関市竹崎町3-13-6	温井 完治	3県	約180人	平成4年7月27日	平成22年(6回)	
10	四代目小桜一家	鹿児島県鹿児島市甲突町9-1	平岡 喜榮	県内	約100人	平成4年7月27日	平成22年(6回)	
11	三代目浅野組	岡山県笠岡市笠岡615-11	串田 芳明	2県	約140人	平成4年12月14日	平成22年(6回)	
12	道仁会	福岡県久留米市通東町6-9	小林 哲治	4県	約790人	平成4年12月14日	平成22年(6回)	
13	二代目親和会	香川県高松市塩上町2-14-4	吉良 博文	県内	約70人	平成4年12月16日	平成22年(6回)	
14	双愛会	千葉県市原市潤井戸1343-8	塩島 正則	2県	約270人	平成4年12月24日	平成22年(6回)	
15	三代目狭道会	広島県尾道市山波町3025-1	渡邊 望	6県	約190人	平成5年3月4日	平成23年(6回)	
16	太州会	福岡県田川市大字弓削田1314-1	日高 博	県内	約190人	平成5年3月4日	平成23年(6回)	
17	七代目酒梅組	大阪府大阪市中央区西心斎橋2-7-15	金 在鶴	1府1県	約120人	平成5年5月26日	平成23年(6回)	
18	極東会	東京都豊島区西池袋1-29-5	曹 圭化	1都1道13県	約1,200人	平成5年7月21日	平成23年(6回)	
19	東組	大阪府大阪市西成区山王1-11-8	岸田 清	府内	約160人	平成5年8月4日	平成23年(6回)	
20	松葉会	東京都台東区西浅草2-9-8	李 春星	1都1道8県	約1,200人	平成6年2月10日	平成24年(6回)	
21	三代目福博会	福岡県福岡市博多区千代5-18-15	金 寅純	4県	約330人	平成12年2月10日	平成24年(4回)	
22	九州誠道会	福岡県大牟田市上官町2-4-2	朴 政浩	5県	約350人	平成20年2月28日	平成23年(1回)	

제7장 결론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은 역사적 배경 등의 이유로 일본 범죄수사규범을 계승하여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범죄수사규범을 살펴보면서 일본 경찰이 일본 검찰과의 협력관계 하에 1차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상당 부분 독자적으로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하게 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이 비록 일본 범죄수사규범을 모태로 하고 있다지만 현시점에서 양국의 범죄수사규칙(법)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범죄수사규칙이 보다 각 사안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범죄수사규칙 제59조(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등 참여)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에 앞서 피의자 신문과정시 변호인 참여지침(1999. 10)을 하달하여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경찰의 한층 높아진 인권의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정 범죄수사규칙 제11장(범죄피해자보호)을 신설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찰이 피의자 인권보장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 보호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 범죄수사규칙(법) 통한 양국 경찰의 수사활동을 보건대, 이제 우리경찰도 일본 경찰 못지않은 충분한 수사시스템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독자적인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 그리고 상당한 부분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사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중겸·배성인, 「기본자료편-일본경찰연구자료집(Ⅲ-1)」, 치안연구소, 1998.

박창호·이동희 외 3명,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4.

이연수·신현덕, 「범죄수사규칙」, 법률정보센터, 2005.

정지운, 「폭력단대책법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09.

2. 논문

김선택,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규정 연구”, 경찰청, 2008.

김태현, “한국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연구-현행 경찰과 검찰의 수사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법무대학원, 2007.

이동희, “사개추위안의 피의자 신문·녹화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2009.

이형범, “피의자 공개수사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9.

조 국, “경찰 ‘보호조치’ 와 ‘훈방조치’ 의 법적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치안정연구소, 2003.

3. 언론매체

중앙일보, “다시 불거진 ‘검·경 수사권’ 조정 법 개정안”, 2009.

4. 외국문헌

毛利文彦, 「警視庁 捜査1課 殺人犯」, 角川書店, 2005.

三井誠·酒卷匡, 신동운 역,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법문사, 2003.

일본경찰청 경찰백서, 2009년판.

【한일 범죄수사규칙(법) 章 대조표】

범죄수사규칙(우리나라)	범죄수사규범(일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1. 수사의 기본원칙, 2. 수사의 지휘 및 보고 3.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계 4. 수사서류	1. 수사의 기본 2. 수사조직 3. 수배와 공조 4. 검찰관과의 관계 5. 특별사법경찰직원등과의 관계 6. 수사서류
제2장 내사와 수사개시	제2장 수사의 단서
1. 내사 2. 범죄신고 3. 변사자의 경시 4. 범죄인지	1. 단서의 파악 2. 고소, 고발 및 자수
제3장 임의 수사	제3장 수사의 개시
1. 출석요구 2. 피의자 신문 및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 3. 영상녹화	1. 수사의 착수 2. 수사자료 3. 범죄현장 4. 긴급배치 5. 수사방침
제4장 체포와 구속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압수와 수색	제5장 체포
제6장 검증	제6장 수색, 압수, 검증
제7장 통신수사	제7장 몰수보전 등의 청구
1. 통칙 2. 긴급통신수사 3. 통신수사 집행 후 조치	
제8장 증거	제8장 신문
제9장 수배와 공조	제9장 감식
제10장 송치와 이송	제10장 송치와 송부
제11장 범죄피해자보호	제11장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제12장 특칙	제12장 교통신령위반사범에 관한 특칙
1.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2. 성폭행 사건에 관한 특칙 3.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4. 국제범죄에 관한 특칙 5. 다중범죄에 관한 특칙	
제13장 보석자 등의 관찰	제13장 국제범죄에 관한 특칙
제1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14장 군중범죄에 관한 특칙
제15장 부칙	제15장 폭력단 범죄에 관한 특칙
	제16장 보석자 등의 관찰
	제17장 영장의 집행
	제18장 잡칙, 부칙

【부록 : 일본 범죄수사규범】

<p>제1장 총칙</p> <p>제1절 수사의 기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수사의 기본) ①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하고 사건을 해결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적·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수사할 때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수사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p> <p>제3조(법령 등의 준수) 수사를 할 때에는 경찰법(1954년 법률 제162호), 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131호, 이하 ‘소송법’이라 함) 그 밖에 법령 및 규칙을 준수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p> <p>제4조(합리적인 수사) ①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②수사를 할 때에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은 배제하여야 하며,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의 진술을 과신하지 말고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물적 증거를 비롯한 모든 증거의 발견 및 수집에 힘써야 하며 감식시설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p> <p>제5조(종합수사) 수사를 할 때에는 모든 정보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지식기술을 넓게 활용함과 동시에 항상 조직력에 의한 수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p> <p>제6조(착실한 수사) 수사는 안이하게 성과를 추구하지 말고, 범죄의 규모, 방법 그 밖에 제반 상황을 주도면밀히 판단하여 착실하게 해야 한다.</p> <p>제7조(공소, 공판에의 배려) 수사는 형사수속의 일환인 것을 감안하여 공소의 실행 및 공판심리를 염두해 두고 행하여야 한다. 특히, 재판원참가형사재판에 관한 법률(2004년 법률 제63호) 제 2조 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해당하는 수사를 할 때에는 입증에 있어서 국민 재판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해야 한다.</p>	<p>제8조(규율과 협력) 수사를 할 때에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여 독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상사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평소 경찰규율을 지키면서 협력하여 사안에 임하여야 한다.</p> <p>제9조(비밀유지 등) ①수사를 할 때는 비밀을 준수하고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해자(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수사할 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준수하는 것 외에 고소, 고발, 범죄신고 그 밖에 범죄수사의 단서 또는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제11조(피해자 등의 보호 등) 제2항의 ‘자료제공자’라 한다.)의 명예 또는 신용을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p> <p>제10조의 1(관계자 등에 대한 배려) 수사를 할 때는 평소 언동을 신중히 하고 관계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p> <p>제10조의 2(피해자 등에 대한 배려) ①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하 이 절에서는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②피해자 등의 조사에 알맞은 장소의 이용 및 그 밖에 피해자등에게 가능한 불안 등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p> <p>제10조의 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피해자등에 대하여 형사수속의 개요를 설명함과 함께 당해사건의 수사 경과 그 밖에 피해자 등의 구제 또는 불안해소를 위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단, 수사 그 밖에 경찰의 업무 또는 공판에 지장을 주거나 관계자의 명예 그 밖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제11조(피해자등의 보호 등) ①경찰관은 범죄수법, 동기 및 조직적 배경, 피의자와 피해자 등과의 관계, 피의자의 언동 그 밖의 상황으로부터 후에 피해자 등을 해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당해 피해자 등의 성명 그 밖에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알려서는 안 되며 필요에 따라 당해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자료제공자에게도 준용한다.</p>
---	--

<p>제12조(연구와 개선) 경찰관은 현재 수사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평소 수사관계법령의 연구 및 수사관련 지식, 기능의 습득에 노력해야 하며 수사방법의 개선에 힘써야 한다.</p> <p>제13조(비망록) 경찰관은 수사할 때 당해 사건의 공판심리에 증인으로 출두할 경우와 장래의 수사를 위하여 그 경과와 그 밖의 참고가 될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p> <p>제14조(수사의 회피)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관계인, 친족 그 밖에 특별관계에 있어 수사에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사의 허가를 얻어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p> <p>제2절 수사의 조직</p> <p>제15조(수사의 조직적 운영)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관계자들의 단결과 통제를 도모하고 그 외의 경찰부서 및 관계경찰과 긴밀히 연락하여 경찰의조직적 기능을 최고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제16조(경찰본부장) 경찰본부장(경시총감 또는 도도부현경찰 경찰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행을 위해 범죄수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며 직원의 합리적 배치, 철저한 지도교양, 자재시설의 정비 등 수사태세의 확립을 도모하고 그 책임을 진다.</p> <p>제17조(수사담당부과장) 형사부장, 경비부장 그 밖에 수사담당 부과장은 경찰본부장을 보좌하고 그 명령을 받아 범죄수사를 지휘감독한다.</p> <p>제18조(경찰서장) 경찰서장은 그 경찰서에 관한 범죄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시에 관해서 경찰본부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p> <p>제19조(수사지휘) ①전3조에 규정한 범죄수사의 지휘에 대하여는 항상 그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직접 지휘해야 하는 사건, 사항 및 지휘방법 그 밖에 수사지휘부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수사본부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0조(수사주임관) ①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당해사건의 수사에 관해 수사주임관을 지명한다. ②수사주임관은 제16조부터 전조까지(경찰본부장, 수사담당부과장, 경찰서장, 수사지휘)의 규정에 의해 지휘를 받아 당해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p>	<p>ㄱ. 수사하여야 할 사항 및 수사원의 임무분담을 정하는 것</p> <p>ㄴ. 압수물 및 그 환가대금의 출납승인, 보관사항의 파악</p> <p>ㄷ. 제3장 제5절(수사방침)의 규정에 의한 수사방침수립</p> <p>ㄹ. 수사원에 대해 수사상황보고의 요구</p> <p>ㅁ. 유치시설에 유치인된 피의자(제136조의 2(현장검증시 주의) 제1항에서의 ‘유치피의자’를 말한다.)의 관해 동향의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유치주임관(피유치자의 유치에 관한 규칙(2007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1호)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유치인을 말한다. 제136조의 2 제1항과 동일)과 협의한다.</p> <p>ㅂ. 피의자신문 그 밖에 수사의 적절한 수행, 피의자 도주 및 자살 기타 사고방지에 관하여 수사원에 대한 지도교양 실시</p> <p>ㅅ. 전 각 호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이 특별히 명령한 사항</p> <p>③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주임관을 지명하는 경우 당해사건의 내용, 소속 직원의 수사능력, 지식경험 및 직무수행 사항을 감안하여 전항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자를 지명해야 한다.</p> <p>④수사주임관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 증거물 등의 인계를 확실히 하고 수사상황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을 명확히 하여 사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p> <p>제21조(수사원) ①경찰관은 상사의 명령을 받아 범죄수사에 입한다. ②경찰관 이외의 수사관계직원은 경찰관을 보조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p> <p>제22조(수사본부) ①중요범죄 그 밖에 사건 발생시 특히 수사를 통일적이고 강력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한다. ②수사본부의 설치, 해산 및 수사본부장의 편성은 경찰본부장이 명한다. ③수사본부장은 명을 받아 수사본부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수사본부를 설치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본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여타 경찰서에서 당해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획득한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본부에 연락해야 한다.</p>
--	--

<p>제23조(보고) ①경찰관은 범죄관련성이 있거나 수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지득한 경우 신속히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 그 밖에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경찰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제24조(그 밖의 기관과의 연락 등) 경찰관은 검찰관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과 수사에 관해 연락 또는 협력할 경우 미리 절차를 밟아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p> <p>제25조(신문발표 등)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문 그 밖의 보도기관 등에 발표할 때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우는 수사본부장) 또는 미리 지정된 자가 행해야 한다.</p> <p>제26조(지도교양) 범치수사에 관한 지도교양은 간부, 전종원 및 일반경찰관 별로 실무적으로 실효성 있게 행한다.</p> <p>제3절 수배와 공조</p> <p>제27조(일반적 협력의무) 경찰관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에 관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p> <p>제28조(공조의 의뢰) ①수사에 필요한 경우 여타의 경찰에 대해 공조의 의뢰(피의자 체포, 소환, 신문, 도품 등(도품 그 외에 재산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해 영득한 물건을 말함. 이하 같음) 그 밖의 증거물의 수배, 압수, 수색, 검증, 참고인 소환, 참고인 신문, 직원의 과건 그 밖의 조치를 의뢰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여타 경찰로부터 공조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행하여 한다. ③공조의 의뢰시 취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의뢰를 받은 경찰의 사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제29조(긴급사건수배)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여타의 경찰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즉시 긴급사건수배서(별지양식 제1호)에 의해 긴급배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p> <p>제30조(사건수배) ①용의자와 수사자료 그 밖에 참고사항에 관하여 통보를 요구하는 수배를 사건수배라 한다. ②사건수배는 사건의 개요와 통보를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하여 한다.</p>	<p>제31조(지명수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체포를 의뢰하고 체포후 인병인도를 요구하는 수배를 지명수배라 한다. ②지명수배는 지명수배서(별지양식 제2호)에 의하여 행한다. ③급속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서에 의해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받고 그 유효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④제29조(긴급사건수배)의 규정의 긴급사건수배에 의해 성명 등이 명확한 피의자의 체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긴급사건수배를 지명수배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p> <p>제32조(지명수배의 종별) ①지명수배를 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신병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한다.</p> <p>ㄱ. 제1종수배(신병의 호송을 요구하는 경우의 수배)</p> <p>ㄴ. 제2종수배(신병을 인수하러 가는 경우의 수배)</p> <p>②지명수배는 제1종 수배를 원칙으로 한다.</p> <p>제33조(지명수배의 계속) 지명수배를 한 경우는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에 주의하고 유효기간경과 후에도 수배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유효기간을 통보해야 한다.</p> <p>제34조(지명통보) ①피의자가 발견된 경우 신병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고 그 사건의 처리를 당해경찰에 의뢰하는 취지의 수배를 지명통보라 한다. ②지명통보는 피의자의 성명 등이 명확하고 범죄사실이 확실한 경우에 지명통보서(별지양식 제2호)에 의해 행한다. ③지명통보된 사건의 경우에는 미리 통보를 한 경찰은 체포영장의 유무, 용의사실의 내용, 관계서류 그 밖의 수사자료의 유무 등을 조회하여 처리한다. ④지명통보를 행한 피의자의 사건처리에 필요한 증거자료, 관계서류 등을 철저히 정비하고 피의자를 발견한 경찰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제78조(사건의 이송과 인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인계서와 함께 증거자료, 관계서류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p> <p>제35조(도품등 수배) ①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의 도품등에 관하여 다른 경찰에 대하여 그 발견을 구하는 수배를 도품등 수배라 한다. ②도품등 수배를 할 때는 발견해야 할 도품등의 명칭, 상표, 품종, 특정 등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p>
--	--

<p>제35조(장물수배서) ①고물상영업업(쇼와24년 법률 제108호)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 전당포영업법(쇼와 25년 법률 제158호) 제21조 제1항의 장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ㄱ. 특별중요장물수배서(수사본부와 관련된 사건에서 발하는 장물수배서)</p> <p>ㄴ. 중요장물수배서(전호의 사건 이외의 중요사건과 관련되어 발하는 장물수배서)</p> <p>ㄷ. 보통장물수배서(그 밖의 사건과 관련되어 발하는 장물수배서)</p> <p>②장물수배서는 전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발해야 한다. ③전조 제2항의 규정은 장물수배서에 준용한다. ④장물수배서를 발하는 경우 장물수배서 원부(별지양식 제3호)와 장물수배서취급부(별지양식 제4호)에 의해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p> <p>제37조(수배등의 적정) 제29조(긴급사건수배), 제30조(사건수배), 제31조(지명수배), 제34조(지명통보), 제35조(도품등수배)에서 규정하는 수배 또는 통보에 관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의 종류, 긴급성 등에 따라 수배의 범위와 최종별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p> <p>제38조(수배등의 해제) ①제29조(긴급사건수배), 제30조(사건수배), 제38조(지명수배), 제34조(지명통보) 및 제35조(도품등수배)에서 정하는 수배 또는 통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사건을 해결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그 수배 또는 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재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도 경우도 전항과 같다. ③전 2항의 외에 공조의뢰 또는 장물수배서를 발한 경우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제39조(참고통보) ①경찰서장은 다른 경찰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해당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사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그 취지를 해당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전항의 통보 외에 중요사건, 다른 곳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사건, 그 밖의 수사 또는 예방상 참고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경찰에 통보해야 한다.</p>	<p>제40조(본부장에게 의 보고) 경찰서장은 제29조(긴급사건수배), 제30조(사건수배), 제31조(지명수배), 제34조(지명통보) 및 제35조(도품등수배)의 규정에 의한 수배 또는 통보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경찰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직접 또는 경찰본부장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p> <p>제41조(신병인도의 원칙) ①지명수배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이하 '체포경찰'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곳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신병을 지명수배한 경찰(이하 '수배경찰' 이라 한다)에게 인도해야 한다.</p> <p>ㄱ. 체포경찰이 수배된 범죄보다 범정형이 무거운 다른 범죄를 관할구역에서 범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p> <p>ㄴ. 체포경찰이 수배된 범죄와 범정형이 동등 이상의 다른 범죄로 수배되어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p> <p>ㄷ. 체포경찰이 수배피의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그 정범 또는 공동정범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p> <p>②동일 피의자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배경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따라 수배경찰에게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p> <p>ㄱ. 수배된 범죄에 대하여 범정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는 죄중이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수배한 경찰</p> <p>ㄴ. 수배된 범죄로 이미 정범 또는 공동정범인 피의자의 일부를 체포하고 있는 경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p> <p>ㄷ. 전2호의 규정 외에는 먼저 수배한 경찰</p> <p>③ 전2항에서 규정하는 신병인도의 원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경찰본부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2조(피의자인도서) 지명수배의 의해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할 때에는 피의자인도서(별지양식 제5호)를 작성해야 한다.</p> <p>제43조(유치의뢰) 피의자의 호송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경찰에 대해 피의자 유치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44조(다른 경찰의 관할구역에서 수사관련 연락) 경찰관은 다른 경찰 관할구역에서 범죄수사를 행할 때에는 관할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p>
---	--

<p>제4절 검찰관과의 관계</p> <p>제45조(수사관련 협력) ①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실행을 위해 미리 연락해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범죄사실의 개요 그 밖의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검찰관에게 연락해야 한다.</p> <p>제46조(일반적 지시) 경찰관은 사법경찰직원수사서류기본서식례 그 밖에 형소법 제19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찰관으로부터의 일반적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 수사하여야 한다.</p> <p>제47조(수사조정 신청) ①경찰관은 다른 사법경찰직원과의 사이에 수사조정에 관하여 형소법 제1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관의 일반적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경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본부장은 전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를 검찰관에게 신청해야 한다.</p> <p>제48조(일반적 지휘) 형소법 제19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찰관으로부터 일반적 지휘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그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여야 한다.</p> <p>제49조(보조를 위한 지휘) 형소법 제1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검찰관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에 관하여 보조하도록 요구받았을 때에는 경찰관은 신속히 그 요구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절 특별사법경찰직원 등과의 관계</p> <p>제50조(공조의 원칙) 형소법 제190조의 특별히 법률로서 정하는 사법경찰직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직원등' 이라 함)와의 공조에 관하여는 공조협정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1조(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직원등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특별사법경찰직원등보다 먼저 안 경우 그 범죄수사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직원등에 인계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사법경찰직원등과 긴밀히 연락하여 그 분야의 전문지식 등의 조언을 받은 경우 충분히 존중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p>	<p>제52조(이송하는 경우) ①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직원등의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특별사법경찰직원등보다 먼저 인지한 경우 그 인지한 범죄수사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직원등이 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신속히 관련 수사자료와 함께 사건을 특별사법경찰직원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수사를 인계한 후에도 해당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가능한 협조하는 것으로 한다.</p> <p>제53조(인계를 받은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직원등의 직무의 범위에 속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그 사건이 직무범위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경찰관에 인계하려 하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을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특별사법경찰직원등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그 밖에 수사협력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후의 수사경과 및 경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4조(수사가 경합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직원등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그 수사가 해당 특별사법경찰직원등이 행하는 수사와 경합될 때에는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해당 특별사법경찰직원등과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하여야 한다.</p> <p>제6조 수사서류</p> <p>제55조(수사서류의 작성) ①수사를 할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수사서류기본서식례에 따라 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고 간결명료하게 표현해야 하며 추측, 과장해서는 아니 된다.</p> <p>제56조(서명·날인 등) ①서류에는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년월일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고 소속 관공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날인은 원칙적으로 도장으로 한다. ③서류(재판소 또는 재판관에게 신청하여 의견진술, 통지 그 밖의 소송행위에 관한 서류는 제외한다.)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④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p> <p>제57조(문자의 가제)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문자를 개변(改變)해서는 아닌 된다. 문자를 첨가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정한 부분에 날인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글자체를 남겨야 한다.</p>
---	---

<p>제58조(서류의 대서) 문맹 등의 이유로 부득이 서류를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사항과 본인의사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p> <p>제2장 수사의 단서</p> <p>제1절 단서의 파악</p> <p>제59조(단서파악의 노력) 경찰관은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인터넷 정보, 익명의 신고, 풍설 그 밖의 사회현상에 주의, 직무질문 등으로 수사단서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0조(수배유무 등의 조회) 질무질문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 그 밖의 수배유무, 피해신고유무, 감식자료 유무 등을 전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경시청 또는 도도부원경찰본부 또는 경찰서에 조회하여야 한다.</p> <p>제61조(피해신고서의 접수) ①경찰관은 범죄피해신고가 있을 때 범죄사건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피해신고서(별지양식 제6호)를 작성하게 하던가 아니면 경찰관이 대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피해신고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제62조(범죄사건신고부) 범죄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범죄사건접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p> <p>제2절 고소, 고발 및 자수</p> <p>제63조(고소, 고발 및 자수의 접수) ①사법경찰원은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하는 자가 있을 때 관할구역 사건을 불문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②사법순사는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하는 자가 있을 때 즉시 사법경찰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p>제64조(자수조서, 고소조서 및 고발조서 등) ①자수, 고발 또는 고소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수조서, 고발조서 또는 고소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고소 또는 고발을 구술로서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취소조서 또는 고발취소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65조(서면에 의한 고소, 고발) 서면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고소고발인의 의사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진술을 요구하여 참고인진술조서(보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66조(피해자 아닌 자의 고소) ①피해자의 대리인이 고소를 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의 대리인이 고소를 한 경우에는 전2항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p> <p>제67조(고소, 고발사건의 수사) ①고소, 고발이 있는 사건은 신속히 수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p> <p>ㄱ. 무고, 중상모략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에 의한 것이 아닌가</p> <p>ㄴ.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가 있지 아니한가</p> <p>제68조(자수사건의 수사) 자수사건 수사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p> <p>ㄱ. 해당 범죄 또는 범인이 이미 발각되지 않았는가</p> <p>ㄴ. 자수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다른 진범인을 은폐하려 함이 아닌가</p> <p>ㄷ. 자수가 자기가 범한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인가</p> <p>제69조(사건의 이송) ①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이 관할구역외의 범죄이어서 당해당 경찰관서에서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관할 경찰에게 신속히 인계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이송을 하였을 때는 신속히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p> <p>제70조(친고죄의 긴급수사) 경찰관은 친고죄와 관련된 범죄를 안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하지 아니하면 증거수집 그 밖에 사후의 수사가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아직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명예, 신용 등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p> <p>제71조(친고죄의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의 수사) 친고죄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부한 후 고소인이 고소취소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송하여야 한다.</p> <p>제72조(청구수사의 수사) 청구를 기다려서 수리해야 할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수사하지 아니하면 증거수집 그 밖에 사후수사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가 있는 후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p>
---	--

<p>제73조(범죄사건의 통지 등) ①국세법칙단속법(1900년 법률 제76호), 관세법(1954년 법률 제61호), 지방세법(1950년 법률 제226호) 그 밖에 법률에 의한 통고처분이 인정되는 범죄사건이 있는 경우를 안 경우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신속히 그 취지를 당해 사건에 관해 조사권한이 있는 관리(이하 ‘수세관리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세관리(收稅官吏)가 조사의 임검, 수세 또는 차압을 할 때에 원조를 요구한 경우 필요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p> <p>제74조(범죄사건의 고발) 범죄사건에 관하여 수세관리등이 고발을 한 경우에는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항상 수사관리등과 긴밀히 연락하여야 한다.</p> <p>제75조(범죄사건의 긴급수사) 범죄사건에 관하여 즉시 수사를 하지 아니하면 증거수집 그 밖에 사후수사가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직 수세관리 등의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수사하여 그 결과를 수세관리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장 수사의 개시</p> <p>제1절 수사의 착수</p> <p>제76조(착수보고) 경찰관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수사의 착수에 앞서 절차를 거쳐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7조(착수에 관한 판단) 수사의 착수에 관하여 범죄의 경중과 사정, 범인의 성격, 사건의 과급성,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사정을 판단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그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제78조(사건의 이송 및 인계) ①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관할권이 없는 사건 또는 당해 경찰관서에서 수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 기타 적절한 경찰관서에 이송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 또는 인계는 사건인계서(별지양식 제5호)에 의한다.</p>	<p>제2절 수사자료</p> <p>제79조(자료의 조직적 수집 등) ①수사자료의 수집은 수사전종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경찰직원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수사자료 및 부분은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수사자료 및 그 부분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환부할 것 이외에는 확실하게 파괴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 또는 파괴된 수사자료가 전자적 기록인 경우 전자적 기록의 특성상 당해 전자적으로 기록된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80조(기초자료의 정비)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널리 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사정,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사상 주의할 필요가 있는 자의 동향 등 수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평소 수집하여 정비해 두어야 한다.</p> <p>제81조(자료에 기초한 수사) 수사를 할 때에는 범죄와 관련되어 유무형의 자료, 내사자료, 그 밖의 제반정보 등 확실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피의자의 체포 그 밖의 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가능한 많은 확실한 자료를 수집해 두어야 한다.</p> <p>제82조(감식자료의 수집정비 및 이용) 지장문, 수법, 사진 기타 감식자료는 평소 수집하여 정비하도록 하며 수사할 때에 이들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83조(참고자료의 수집활용) 수사할 때마다 매회 수사과정상 반성할 점에 대해 검토하고 검토과정에서 얻은 제반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사후수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절 범죄현장</p> <p>제84조(현장임검) ①경찰관은 현장임검이 필요한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수사전종원을 불문하고 신속히 현장에 입장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다른 수사주임관 기타 다른 사람에 의해 현장임검이 행하여질 때에는 철저히 현장을 보존하도록 한다.</p> <p>제85조(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 등) ①경찰관은 현장임검할 때에 부상자가 있는 경우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빈사의 중상자가 있을 때에 응급구호조치를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범인의 성명, 범행의 원인, 피해자의 성명, 목격자 등을 청취해 두어야 한다. ③전항의 중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p>
---	---

<p>제86(원상태 그대로 보존) ①현장을 보존할 때에는 가능한 현장을 범위가 발생한 시점 그대로 보존하여 수사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부상자의 구호, 증거물건의 변질 및 산일 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경찰관이더라도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p> <p>제87조(현장보존의 범위) 경찰관은 범위가 발생한 지점뿐만 아니라 넓게 현장보존의 범위를 정하여 수사자료 발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88조(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①경찰관은 보존할 현장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즉시 그 범위를 표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함부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한다. 이 경우에 현장 또는 그 부근에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성명, 주소 등을 명확히 해 두도록 한다. ② 현장에서 발견된 수사자료가 광선이나 비 등으로 변질, 변형 또는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것은 덮개를 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원상태를 보존하도록 한다.</p> <p>제89조(현장보존을 할 수 없는 경우) 부상자 구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수사자료를 원상태대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 겨냥도, 기록 기타 방법으로 원상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p> <p>제90조(현장 수사의 요점) 현장에서 수사할 때 현장감식 그 밖의 과학적, 합리적 방법에 의해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범행과정을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p> <p>ㄱ. 시간관계</p> <p>a. 범행일시 및 범행일시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p> <p>b. 발각일시 및 상황</p> <p>c. 범행 당시 기상상황</p> <p>d. 기타 시간과 관련 참고사항</p> <p>s. 장소관계</p> <p>a.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 및 그 상황</p> <p>b. 가옥 그 밖의 현장부근 물건 및 그 상황</p> <p>c. 현장배치 등의 상황</p> <p>d. 현장의 기구 기타 물품의 상황</p> <p>e. 지장문, 족적 그 밖의 흔적, 유실물의 위치 및 상황</p> <p>f. 기타 장소와 관련된 참고사항</p> <p>ㄴ. 피해자 관계</p>	<p>a. 범인과 접촉 기타 피해전 상황</p> <p>b. 피해당시 저항, 자세 등 상황</p> <p>c. 상해부위 및 정도, 피해금품의 종류 및 수량 등 피해의 정도</p> <p>d. 사체의 위치 및 창상, 혈류 기타 상황</p> <p>e. 기타 피해자와 관련된 참고사항</p> <p>ㄷ. 피의자 관계</p> <p>a. 현장침입 및 도주경로</p> <p>b. 피의자의 수와 성별</p> <p>c. 범행수단, 방법 기타 범죄실행의 상황</p> <p>d. 피의자의 범행동기 및 피해자와의 면식, 피의자의 현장에 대한 지리감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p> <p>e. 피의자의 인상, 풍채, 특징, 습벽 기타 특이한 언동 등</p> <p>f. 흉기의 종류, 형상 및 가해 방법 기타 가해 상황</p> <p>g. 기타 피의자와 관련된 참고사항</p> <p>제91조(현장에서의 임부분담) 현장에서 수사할 때 수사주임관이 수사원의 임부분담을 정하여 조직적으로 하여야 한다.</p> <p>제92조(자료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 유류품, 현장 지장문 등의 자료를 발견한 경우 년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용지에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서명을 요청하여 그것을 첨부하고 촬영하는 등 증거력 보존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제4절 긴급배치</p> <p>제93조(긴급배치)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범인검거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구역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동일하다.</p> <p>제94조(긴급배치계획) ①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긴급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리 주도면밀히 긴급배치계획을 세우 소속 경찰관이 주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계획을 세울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경찰 기타 관계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p>
---	--

<p>제95조(긴급배치 방법) ①긴급배치는 전조의 계획에 근거하여 범인의 수, 차량이용의 상황, 흉기의 유무 기타 범죄의 규모와 양태를 고려하여 배치구역, 경찰관 수, 특히 경계해야 할 구역 또는 지점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②긴급배치를 할 때에 우선 교통의 요소(목배치) 기타 중요지점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사후 순차적으로 배치망을 좁히거나 넓히거나 하여 상황에 맞게 배치한다.</p> <p>제5절 수사방침</p> <p>제96조(수사방침의 수립) ①수사할 때에는 수사방침을 세워 그 방침에 따라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사방침은 현장에서 수사 등에 의해 수집한 유무형의 수사자료, 평소 수집해 둔 기초자료 등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세워야 한다.</p> <p>제97조(수사방침이 실시) 수사방침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사에 종사하는 자의 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여 한다.</p> <p>제98조(수사회의) 수사방침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사회의를 열고 되도록 많은 수사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p> <p>제4장 임의수사</p> <p>제99조(임의수사의 원칙) 수사는 가능한 임의수사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p> <p>제100조(승낙을 구할 때 유의) 임의수사를 할 때에 상대방에게 승낙을 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p> <p>ㄱ. 승낙을 강제하거나 의심 받을 우려가 있는 태도 또는 방식은 취하지 말 것</p> <p>ㄴ. 임의성이 의심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배려를 할 것</p> <p>제101조(탐문 그 밖의 내사) 수사를 할 때에 탐문, 미행, 밀행, 잠복 등에 의해 가능한 많은 수사자료를 입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2조(임의출두) ①수사를 위해 피의자 기타 관계자에게 임의출두를 요하는 경우 전화, 호출장(별지양식 제7호)의 송부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출두 일시, 장소, 용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출두인인에게 확실히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임의출두와 관련하여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피의자 기타 관계자에게 임의출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호출부(별지양식 제8호)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결과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03조(체포영장 발부후의 사정변경)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그 후 사정변경에 의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의수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체포영장은 그 유효기간 내이라도 즉시 재판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제104조(실황건분) ①범죄현장 기타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사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건분을 하여야 한다. ②실황건분은 주거나, 관리자 기타 관계인의 입회하에 행하고 그 결과를 실황건분조서를 정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③실황건분에는 가능한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의 규정에 의해 실황건분을 작성할 때에는 사진을 붙인 부분에 그 설명을 부기하는 등 알기 쉬운 실황건분조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05조(실황건분기재조서기재상의 주의) ①실황건분조서는 객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피의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지시설명 범위를 넘어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피의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지시설명 범위를 넘어서 특별히 그 진술을 실황건분조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소법 제198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2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미리 자기 의사에 반하여 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조서에 기재한다.</p> <p>제106조(피의자 진술에 근거한 실황건분) 피의자의 진술의 의한 흉기, 도품등 기타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 있어서 증명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건분을 하고 그 발견 상황을 실황건분조서에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07조(여자에 대한 임의 신체검사 금지) 여자에 대하여 임의로 신체검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나체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제108조(사람의 주거 등에 대한 임의수색 금지)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에 대하여 수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거주 또는 간수자의 임의 승낙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색허가장의 발부를 받아 수색하여야 한다.</p> <p>제109조(임의제출물의 영치) ①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임의제출물을 영치할 때에는 가능한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한 후 영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소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품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임의제출물을 영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그 제출물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게 하고 소유권포기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p>
--	---

<p>제103조(체포영장 발부후의 사정변경)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그 후 사정변경에 의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의수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체포영장은 그 유효기간 내이라도 즉시 재판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제104조(실황건분) ①범죄현장 기타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사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건분을 하여야 한다. ②실황건분은 주거나, 관리자 기타 관계인의 입회하에 행하고 그 결과를 실황건분조서를 정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③실황건분에는 가능한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의 규정에 의해 실황건분을 작성할 때에는 사진을 붙인 부분에 그 설명을 부기하는 등 알기 쉬운 실황건분조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05조(실황건분기재조서기재상의 주의) ①실황건분조서는 객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피의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지시설명 범위를 넘어서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피의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지시설명 범위를 넘어서 특별히 그 진술을 실황건분조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소법 제198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2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미리 자기 의사에 반하여 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조서에 기재한다.</p> <p>제106조(피의자 진술에 근거한 실황건분) 피의자의 진술의 의한 흉기, 도품등 기타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증명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건분을 하고 그 발견 상황을 실황건분조서에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07조(여자에 대한 임의 신체검사 금지) 여자에 대하여 임의로 신체검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나체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제108조(사람의 주거 등에 대한 임의수색 금지)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에 대하여 수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거주 또는 간수자의 임의 승낙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색허가장의 발부를 받아 수색하여야 한다.</p> <p>제109조(임의제출물의 영치) ①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임의제출물을 영치할 때에는 가능한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한 후 영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소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품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임의제출물을 영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그 제출물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게 하고 소유권포기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110조(유실물의 영치) ①피의자 그 밖의 사람의 유실물을 영치할 때에는 주거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입회를 얻어 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영치에 관하여 실황건분조서 등에 의해 그 물건이 발견된 상황 등을 명확하게 한 후 영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11조(원상태 그대로 영치) 영치할 때에 지장문 기타 부착물을 파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영치물을 가능한 원상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멸실, 훼손, 변질, 변형, 혼합 또는 산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112조(폐기등의 처분) ①영치물을 폐기, 환가, 환부 또는 가환부할 때에는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히 폐기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신속히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가)환부청구서를 받아 두는 것과 함께 먼저 가환부 한 물건에 대하여 환부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부통지서(별지양식 제9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영치물에 대하여는 간수자를 두며 또한 소유자 등의 승낙을 받아 보관시키는 경우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이 경우 가능한 그 사람으로부터 보관청서(保管請書)를 받아 두어야 한다. ④환가, 환부 및 가환부 처분은 사법경찰원이 하여야 한다.</p> <p>제113조(폐기처분등과 증거와의 관계) ①영치물에 관하여 폐기 또는 환가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p> <p>ㄱ. 처분에 앞서 처분할 물건의 상황을 사진, 겨냥도, 모사도 또는 기록 등의 방법으로 분명히 할 것</p> <p>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영치물의 성상, 가격 등을 감정해 둘 것. 이 경우에 재감정을 위해 물건의 일부를 보존해 둘 것</p> <p>②폐기 또는 환가처분을 할 때에 각각 폐기처분서(별지양식 제10호) 또는 환가처분서(별지양식 제11호)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14조(세수관리 등과의 연락) 통고처분이 인정되는 범칙사건에 관한 영치물에 대하여 폐기 또는 환가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세수관리 등에게 연락하여야 한다.</p> <p>제115조(영치물 환부 등의 상대방에 대한 조사) 영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할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는 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에 대하여 조사하여 사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한다.</p>
---	--

<p>제116조(영치조서에의 기재) 영치물의 폐기, 환가,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할 때에는 영치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17조(증거물건보존부) 사건의 수사가 장기화될 때에는 영치물을 증거물건보존부(별지양식 제12호)에 기재하여 그 출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p> <p>제5장 체포</p> <p>제118조(체포권 운용의 신중적경) ①체포권은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그 밖의 체포의 이유, 체포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유무, 수집한 증거의 증명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지정사법경찰원이 통상체포장을 청구할 때에는 절차를 거쳐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후 신속히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19조(통상체포의 청구) 형소법 제199조에 의한 체포장(이하 ‘통상체포장’이라 한다.)의 청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안위원회가 지정한 경우 이상의 계급에 있는 사법경찰원(이하 ‘지정사법경찰원’이라 한다.)이 책임을 지고 행한다. ②지정사법경찰원이 통상체포장을 청구할 때에는 절차를 거쳐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만, 급속을 요하고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후 신속하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0조(긴급체포장의 청구) ①형소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체포장(이하 ‘긴급체포장’이라 한다.)은 지정사법경찰원 또는 당해 체포한 경찰관이 청구한다. 다만, 지정사법경찰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법경찰원인 경찰관이 청구하여도 무방하다. ②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처리는 절차를 거쳐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체포이유가 된 범죄사실이 없거나 그 사실이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해 진 경우 또는 신병을 유지하여 신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도 긴급체포장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p> <p>제121조(친고죄 사건의 체포장 청구) 체포장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건이 친고죄와 관련이 있으나 아직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권자에 대하여 고소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p>	<p>제122조(체포장 청구의 소명자료) ①통상체포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 필요가 있는 것을 소명하는 피해신고서, 참고인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행하여 한다. 다만, 형소법 제19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통상체포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출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긴급체포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족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써 체포의 필요와 급속을 요하여 체포장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을 소명하는 체포수속서, 피해신고서,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p> <p>제123조(청구를 위한 출두) ①체포장을 청구할 때에는 가능한 그 사건수사를 담당할 경찰관이 재판관에게 출두하여야 한다. ②재판관으로부터 특별히 해당 체포장을 청구한 자의 출두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자가 직접 출두하여 진술하고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제124조(체포장 기재의 변경) 체포장이 발부된 후 체포전에 인치장소 그 밖의 기재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포장을 청구한 경찰관 또는 이를 대신할 만한 경찰관이 해당 체포장을 발부한 재판관 또는 그 자의 소속 재판소, 그 밖의 재판관에 대하여 서면(인치장소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치장소변경청구서)으로 체포장의 기재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p> <p>제125조(영장청구부) 체포장을 청구한 때에는 영장청구부(별지양식 제13호)에 청구수속, 발부 후 상황 등을 분명하게 해두어야 한다.</p> <p>제126조(체포 시 주의) ① 체포할 때에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냉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실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체포할 때에는 미리 체포 시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체포를 위해 필요한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④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그 신체에 대하여 흉기소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할 경우에는 개개의 피의자에 대하여 인상, 체격 기타 특징, 범죄사실 및 체포시 정황, 해당 피의자와 증거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포, 압수 기타 처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신문 및 입증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	---

<p>제131조(지장문의 채취, 조회 등) ①채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인지 후 신속하게 지장문을 채취하고 사진 기타 감식자료를 확실하게 작성함과 동시에 지장문 조회 및 여죄, 지명수배 유무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신문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여죄 및 지명수배 유무를조회하여야 한다.</p> <p>제132조(변호인 선임의 신청 통지) 채포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여 당해 변호사, 변호사법인 또는 변호사회 또는 형제 기타 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때에는 변호인선임통지부(별지양시 제14호)에 기재하고 그 수속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p> <p>제133조(변호인의 선임) ①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변호인과 연서한 선임 신청서를 당해 피의자 또는 형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에게 제출하게 한다. ②피의자의 변호인 선임신청서는 각 피의자별 3인을 넘는 경우에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 다만, 3인을 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관할지방법관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변호인 선임 시 경찰관은 특정의 변호인을 알려주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4조(변해녹취상의 주의) 피의자의 변해를 녹취할 때에는 그 진술이 범죄사실의 핵심을 언급하는 등 변해의 범위 외인 경우에는 변해녹취서에 기재하지 말고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35조(자연사유 보고서) 피의자의 신병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 원격지에서 피의자를 채포한 이유로 또는 채포한 피의자가 질병, 만취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형소법 제20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간제한에 따를 수 없었을 경우에는 자연사유보고서를 작성하여 송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36조(체포수속서) ①피의자를 채포한 때에는 체포 연월일시, 장소, 체포시의 상황, 증거자료의 유무, 인지 연월일시 등 체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기재한 체포수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에는 현재 죄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여 마친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 또는 형소법 제21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한 자가 죄를 실행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을 체포수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36조의 2(현장검증 시 주의) ①유치피의자를 대동하고 경찰시설 밖에서 행하는 실황건본 그 밖의 수사는 미리 수사주임관이 유치주임관과 협의작성하여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의해 행하여져야 한다. ②전항의 계획은 대동하는 피의자, 일시, 장소, 일정, 당해 수사종사자와 임무분담, 피의자의 도망과 기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수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p> <p>제136조의 3(수사와 유치의 분리) 수사원은 직접 범죄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당해 범죄 피의자의 유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장 수색, 차압(압수) 및 검증</p> <p>제1절 통칙</p> <p>제137조 ①형사법 제2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 차압, 검증 또는 신체검사의 영장은 지정사법경찰직원이 청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사법경찰원이 청구해도 무방하다. ②전항의 영장을 청구할 때 절차를 거쳐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고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후 신속히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영장을 청구한 때에는 영장청구부에 청구의 수속, 발부 후의 정황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p> <p>제138조(영장청구 시 주의) 수색, 차압, 검증 또는 신체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수사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를 정해 수색할 만한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압수할 만한 물건, 검증할 만한 장소, 신체 또는 물건, 검증할 만한 신체의 부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p> <p>제139조(소명자료) ①수색, 차압, 검증 또는 신체검사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진술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수사보고서 그 밖의 범죄수사를 위한 당해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이외의 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서 수색영장을 재판관에 청구할 때에는 압수할 만한 물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우편물, 신서편 또는 전신에 관한 서류로 법령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보관 또는 소지하는 것(피의자가 발송하였거나 피의자에게 발송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차압허가장을 재판관에 청구할 때에는 그 물건이 해당 사건과 관계됨이 인정되는 충분한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	--

<p>제140조(실시상의 일반적 주의) ①수색, 차압 또는 검증을 할 때에는 필요 이상으로 관계자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수색, 차압 또는 검증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조물,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서류 기타 물건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압수, 차압 또는 검증을 마친 때에는 가능한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41조(영장의 제시) ①영장에 의한 수색, 차압, 검증 또는 신체수색을 할 때에는 해당처분의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이유에 의해서 해당처분의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회인에 대하여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제142조(체포시의 수색 등) 피의자를 체포할 때 필요시 체포현장에서 형소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 차압 또는 검증을 하며 수사자료를 발견·입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43조(입회) ①공무소 내에서 압수, 차압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공무소의 장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입회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주거 또는 타인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 내에서 수색, 차압 또는 검증할 때에는 주거인 또는 간수자 또는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입회를 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주민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형소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해 피의자를 수색하는 경우에 있어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경우에는 성년의 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여자의 신체를 검증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성년의 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p> <p>제144조(피의자 등의 입회) ①수색, 차압 또는 검증을 함에 있어서 수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항상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언행이나 거동에 주의하고 새로운 수사자료를 입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절 수색</p> <p>제145조(제3자의 입회) ①수색을 함에 있어서 공무소 내 또는 타인이 거주하거나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 내 이외의 장소에서 수색을 할 때에도 가능한 제3자의 입회하에 수색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3자를 입회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다른 경찰관의 입회하에 수색을 하여야 한다.</p> <p>제146조(수색의 분담) 수색을 할 경우에는 수색주입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수색 장소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각자의 분담을 정하고 주도면밀하게 수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47조(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①수색을 할 때 입회인 또는 특히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는 수색 장소에서 퇴거시키고 그 장소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퇴거를 강제하거나 간수를 붙여 수색을 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단,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제148조(수색중지 시 조치) 수색에 착수한 후, 일시적으로 수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수색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붙여 사후에 수색의 속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두어야 한다.</p> <p>제149조(수색조서) ①수색을 한 경우 수색상황을 명확하게 하고 수색조서(피의자수색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색 시 처분을 받은 자에게 수색허가장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못한 경우, 여자의 신체를 수색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여 성년의 여자를 입회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p> <p>제150조(수색증명서)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물수할 만한 물건이 없는 경우에 당해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수색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	---

<p>제2절 수색</p> <p>제145조(제3자의 입회) ①수색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 소 내 또는 타인이 거주하거나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 내 이외의 장소에서 수색을 할 때에도 가능한 제3자의 입회하에 수색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3자를 입회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다른 경찰관의 입회하에 수색을 하여야 한다.</p> <p>제146조(수색의 분담) 수색을 할 경우에는 수색주입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수색 장소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각자의 분담을 정하고 주도면밀하게 수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47조(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①수색을 할 때 입회인 또는 특히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는 수색 장소에서 퇴거시키고 그 장소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퇴거를 강제하거나 간수를 붙여 수색을 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단,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제148조(수색중지 시 조치) 수색을 착수한 후, 일시적으로 수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수색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붙여 사후에 수색의 속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두어야 한다.</p> <p>제149조(수색조서) ①수색을 한 경우 수색상황을 명확하게 하고 수색조서(피의자수색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색 시 처분을 받은 자에게 수색허가장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못한 경우, 여자의 신체를 수색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여 성년의 여자를 입회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p> <p>제150조(수색증명서)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물수할 만한 물건이 없는 경우에 당해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수색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제3절 차압</p> <p>제151조(영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09조(임의제출물의 영치) 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110조 제1항부터 제117조까지(유류물의 영치, 원상태 대로의 영치, 폐기 등의 처분, 폐기처분 등과 증거와의 관계, 수세관리 등과의 연락, 영치물의 환부 등의 상대방 조사, 영치조서에의 기재, 증거물건보존부)의 규정은 차압을 할 때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 제2항 및 제116조 중 「영치조서」는 「차압조서」로 대신한다.</p> <p>제152조(수색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5조(제3자의 입회), 제147조(집행중의 퇴거 및 출입금지) 및 제148조(수색중지의 경우의 조치)의 규정은 차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53조(수색조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9조(수색조서) 제2항의 규정은 차압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154조(차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범죄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그 물건에 대하여 차압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함과 동시에 은닉, 산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4절(검증)</p> <p>제155조(검증) 범죄현장 기타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검증에 관하여 사실발견을 위하여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156조(사체의 검증 등의 주의) ①사체의 검증, 분묘의 발굴 등을 함에 있어서 예(禮)를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통지하고 가능한 입회시키도록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체의 피부, 부착물, 분묘내의 매장물 등이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차압허가장에 의한 차압을 하여야 한다.</p> <p>제157조(실황건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104조 제3항부터 제106조까지(실황건분, 실황건분조서기제상의 주의, 피의자의 진술에 기초한 실황건분)의 규정은 검증을 할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실황건분조서」는 「실황건분 또는 신체검사조서」로 대신한다. ②검증을 할 경우에 있어서 다른 처분과 동시에 신체검사를 할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검증조서에 신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p>
---	---

<p>제158조(수색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제145조(제3자의 입회), 제147조(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제148조(수색중지의 경우의 조치) 및 제149조(수색조서) 제1항의 규정은 검증에 대하여 제149조(수색조서) 제2항의규정은 검증조서의 작성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49조 제1항의 규정중 「수색조서」는 「검증조서 또는 신체검사조서」로 대신한다.</p> <p>②신체검사 시 부득이하게 입회인을 참가시키지 못한 때에는 그 사정을 신체검사조서에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p> <p>제159조(신체검사와 관련한 주의)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서 형소법 제2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관이 불인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 이외에 성별, 연령, 건강상태, 장소적 관계 기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온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제160조(의사 등의 조력)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p> <p>제161조(부상자의 신체검사) 부상자의 부상부위의 신체검사는 그 상황을 촬영 등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가능한 단시간에 종료하도록 한다.</p> <p>제162조(신체검사 거부 시 조치) 형소법 제2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거부한 자에 대한 과료처분 또는 거절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처분을 재판소에 청구하는 때에는 과료처분등청구서를 작성해서 하여야 한다.</p> <p>제7장 몰수보전 등의 청구</p> <p>제163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제119조(통상체포장의 청구)의 규정은 국제적인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94호, 이하 이 조에서는 「마약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 및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36호, 이하 이 조에서는 「조직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의 몰수보전(마약특례법 제19조 제1항 및 조직범죄처벌법 제22조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다음 조 제1항 및 제165조에 있어서 동일하다.) 및 부대보전(마약특례법 제19조 제2항 및 조직범죄처벌법 제22조 제2항의 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다음 조 제2항 및 제165조에 있어서 동일하다.)의 청구에 대하여 준용한다.</p>	<p>제164조(몰수보전 등의 청구의 소명자료) ①몰수보전을 청구할 때에 있어서 처분을 금지하여야 할 재산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데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몰수보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조서, 참고인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서 하여야 한다. ②부대보전청구의 경우에는 처분을 금지 할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에 의해 당해권리가 소멸된다고 판단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해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부대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당해권리가 가장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피의자조서, 참고인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p> <p>제165조(몰수보전 등 청구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한 때에는 몰수보전등청구부(별지양식 p15호)에 의해 청구수속, 관계서류의 송부일일 등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p> <p>제8장 신문</p> <p>제166조(신문의 마음가짐) ①신문을 할 때에는 있어서 피의자의 동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의자의 도망 및 자살 기타 사고를 방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신문할 때에는 냉정을 유지하고 감정에 지우치지 아니하며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정도 명확히 하도록 한다. ③신문할 때에는 언동에 주의하고 상대방의 연령, 성별, 환경, 성격 등에 걸맞은 대우를 하는 등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며 행하여야 한다.</p> <p>제167조(심문에 있어서 유의사항) ①신문을 할 때에는 피의자의 동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의자의 도망 및 자살 기타 사고를 방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신문을 할 때에는 냉정을 유지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정도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신문을 할 때에는 언동에 주의하고 상대방의 연령, 성별, 환경, 성격 등에 맞추어 그 자와 걸맞게 취급하는 등 그 심정을 이해하여 행하여야 한다.</p> <p>제168조(임의성의 확보) ①신문을 할 때에는 강제, 고문, 협박 기타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되지 아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신문을 할 때에는 자기가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방에 암시하는 등 함부로 진술을 유도하고 진술의 대가로서 이익을 공여할 만한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신문은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 또는 장시간에 걸쳐 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p>
--	---

<p>제168조의2(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의 신문 시 유의사항)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를 신문할 때에는 그 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문하는 시간이나 장소 등에 관하여 배려함과 동시에 진술의 입의성에 의심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장애의 정도 등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제169조(자기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통지) ①피의자 신문을 할 때에는 미리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고지는 신문이 상당기간 중단된 후 다시 신문을 개시하거나 신문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시 하여야 한다.</p> <p>제170조(공범자의 신문) ①공범자의 신문은 가능한 분리하여 통모를 방지하고 함부로 진술을 맞추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대질신문을 할 경우에는 특히 신중을 기하고 일방이 타방의 위협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시기와 방법을 그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171조(증거물의 제시) 수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증거물을 피의자에게 제시하는 때 그 시기와 방법의 적절함을 기하고 그 때의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p> <p>제172조(임상에서의 신문) 상대방이 임상에서 진술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의사 기타 적당한 사람을 입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73조(보강증거수사 필요) 신문에 의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거나 불리한 진술이거나를 불문하고 즉시 그 진술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를 행하고 물적증거, 정황증거 기타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p> <p>제174조(전문진술의 배제) ①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신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능한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로부터 진술을 요구하여 한다. ②중요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이고 전문에 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한 신문이 행하여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75조(진술자 사망 등에 대비한 조치) 피의자 이외의 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사망,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기타 이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사실 존부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피의자, 변호인 기타 적당한 자를 신문에 입회시키거나 검찰관에 의한 신문이 행하여지도록 연락하는 등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p>	<p>제176조(증인신문청구에 관한 연락) 형소법 제226조 또는 동법 제227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인신문청구연락서에 동법 제226조 또는 동법 제227조에 규정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관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증명해야 할 사실과 심문해야 할 사실은 특히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재한다.</p> <p>제177조(진술조서) ①신문한 때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피의자진술조서 또는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수기, 상신서, 시발서 등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필요시 피의자진술조서 또는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78조(진술조서의 기재사항) ①피의자진술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본적, 주거, 직업, 성명, 생년월일, 연령 및 출생지(피의자가 법인인 경우는 명칭 또는 상호,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거, 피의자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는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관리인 또는 주간부의 성명 및 주거) ㄴ. 구(舊성)명, 변명(變名), 위명(位名), 통칭 및 별명 ㄷ. 위기(位記), 훈장, 포상, 기장, 은급(恩級) 또는 연급의 유무(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 및 등급) ㄹ. 전과의 유무(있는 경우에는 죄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의 신고 및 보호관찰의 병과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및 담당 재판소의 명칭과 그 연월일) ㅁ.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가출소, 특별사면에 의한 형의 감면 또는 형의 소멸의 유무 ㅂ. 기소유예 또는 미죄처분의 유무(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관청 및 처분 연월일) ㅅ. 보호처분 유무(있는 경우에는 처분내용, 처분관청 및 연월일) ㅇ. 현재 타 경찰서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지 여부(있는 경우에는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및 해당수사기관의 명칭) ㅈ. 현재 재판계류중인 사건의 유무(있는 경우에는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의 연월일 및 해당재판소의 명칭) ㅊ. 학력, 경력, 자산, 가족, 생활환경 및 교우관계 ㅋ. 피의자와의 친족 또는 동거관계의 유무(친족이 있는 경우 친족범위) ㅌ. 범죄일시, 장소, 방법, 동기 또는 원인과 범행 상황, 피해의 정도와 범행후의 행동 ㅍ. 도품등과 관련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인과 친족 또는 동거관계의 유무(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의 범위) ㅎ. 범행후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종기 ㄱ.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좌인이 유무(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	---

<p>②참고인진술의 경우에는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피의자와의 관계도 기재해 두어야 한다. ③형소법 제60조의 구류의 원인이 될 만한 사항 또는 동법 제89조에 규정하는 보석과 관련 제외이유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진술조서 또는 참고인진술조서에 그 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p> <p>제179조(진술조서작성 시 주의사항) ①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p> <p>ㄱ.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추측 또는 과장을 배제하며 불필요한 중복 또는 장난스러운 기재를 피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p> <p>ㄴ.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특히 명확하게 기재함과 동시에 사건의 성질에 맞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제별 또는 장소별로 진술조서를 작성할 것</p> <p>ㄷ. 필요시 문답형식을 취하고 진술자의 진술태도를 기입하여 진술내용 뿐만 아니라 진술한 때의 상황도 명확하게 할 것</p> <p>ㄹ. 진술자가 약어, 방언, 은어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대로 기재하고 적당한 주를 다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것</p> <p>②진술을 녹취한 때에는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아니면 진술자가 분명히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읽어줌과 동시에 진술자에 대하여 증감변경을 신청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p> <p>③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조서(사법경찰직원수사서류기본서식례에 의한 조서에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는 같다.)의 매장마다 기재내용을 확인한 때에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서 매장의 난외에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한다.</p> <p>제180조(보조자 및 입회인의 서명날인) ①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경찰관 그 밖에 적당한 자에게 기록 기타 보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진술조서를 보조한 자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신문 시 변호인 그 밖에 적당한 자를 입회하게 한 때에는 그 진술조서에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181조(서명날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①진술자가 진술조서에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관이 대서하고,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지장을 찍게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경찰관이 대서한 때에는 대서한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진술자가 진술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경찰관은 그 취지를 기재하여 서명날인해 두어야 한다.</p> <p>제182조의 2(신문상황보고서 등) ①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신문실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신문한 경우(당해신문에 관련된 사건이 제198조의 규정에 의해 송치하지 아니하는 사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당해신문을 한 날(당해일의 익일 오전 영시 이후까지 계속하여 신문을 한 때에는 당해 익일 오전 영시부터 해당 신문이 종료하기까지의 시간을 포함한다. 다음 항도 같다.)마다 신속히 신문상황보고서(별지양식 제16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체포 또는 구류(소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근거한 동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포함한다.)에 의한 신병이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당해 체포 또는 구류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와 관계된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진술상황보고서에 덧붙여 당해신문을 한 일자마다 신속히 여죄관계보고서(별지양식 제17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신문상황보고서 및 여죄관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때에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해신문상황보고서 및 여죄관계보고서의 확인란에 서명날인을 요구한다. ④181조의 규정은 전항의 서명날인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3항에서 「그 취지」는 「그 취지 및 그 이유」로 대신한다.</p> <p>제182조의 3(신문실 구조 및 설비 기준) 신문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ㄱ. 문을 한쪽에서 안으로 열리게 하는 등 피의자의 도주 및 자살 기타 사고의 방지에 적당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는 것</p> <p>ㄴ. 외부에서 신문실내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는 것</p> <p>ㄷ. 투시경을 설치하는 등 신문 상황의 파악을 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는 것</p> <p>ㄹ. 적당한 환기, 조명과 방음 설비가 돼 있는 등 적절한 환경에서 피의자가 신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는 것</p> <p>ㅁ. 신문경찰관,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의 수와 필요한 설비에 알맞은 적당한 크기일 것</p>
---	--

<p>제9장 감식</p> <p>제183조(감식의 마음가짐) ①감식은 예단과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②감식을 할 때에는 전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면밀함을 으뜸으로 하고 미세한 것까지도 간과하지 아니하도록 함과 동시에 감식대상이 된 수사자료가 공판심리에서 증명력을 유지하도록 조치해 두어야 한다.</p> <p>제184조(감식기초자료의 수집) 수사자료에 관하여 신속정확한 감식을 하기 위해 미리 자동차도장, 농약, 의약품 기타 품질, 형상, 상표등에 의한 분류가 가능한 물건이며 필요한 것은 수집하고 감식기초자료로서 분류 보존하여 두어야 한다.</p> <p>제185조(감식자료송부상의 주의) ①감식을 위한 수사자료를 송부하는 때에는 변형, 변질, 멸실, 산일, 혼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우송의 경우에는 외장, 용기 등과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직접 지참하는 등의 방법을 써야 한다. ②중요한 감식자료를 주고받을 때에는 상호간에 자료의 명칭, 개수, 주고받은 연월일 및 주고받은 자의 성명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p> <p>제186조(재감식을 위한 고려) 혈액, 정액, 타액, 장기, 모발, 약품, 폭발물 등의 감식에는 가능한 그 전부를 사용하지 말고 일부를 가지고 감식하고 남은 부분은 보존해 두는 등 재감식을 위해 고려하여야 한다.</p> <p>제187조(감식의 촉탁) 수사를 위해 사체해부, 지장문 또는 필적감별, 전자정보처리조직 및 전자기적 기록의 해석 등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감정을 과학경찰연구소 기타 범죄감식기관 또는 적당한 학식경험자에 촉탁하는 때에는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p> <p>제188조(감정촉탁서) 감정을 촉탁하는 때에는 감정촉탁서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하여 행하여야 한다.</p> <p>ㄱ. 사건명 ㄴ. 감정자료의 명칭과 개수 ㄷ. 감정사항 ㄹ. 해당 감정에 참고가 될 만한 다음과 같은 사항 a. 범죄의 연월일시 b. 범죄장소 c. 피해자의 주거, 성명, 연령 및 성별 d. 피의자의 주거, 성명, 연령 및 성별 e. 감정자료의 채취 연월일 및 채위시의 상태 f. 사건내용의 개요 기타 참고사항</p>	<p>②감정촉탁서에 전항 제4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감정인이 예단 또는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당해 감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기재하도록 주의하고 기타 감정촉탁서에는 감정인이 예단 또는 편견을 가질만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해 사건에 관하여 구술로 필요한 설명을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p> <p>제189조(감정처분허가장 및 감정유치) ①감정을 위한 타인의 주거 또는 타인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또는 선박 내에서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의 발굴 또는 물건을 파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를 받아 감정인에게 교부하고 감정을 하여야 한다. ②피의자의 심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촉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감정유치처분이 필요한 경우 재판관에게 그 처분을 청구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아 이에 근거하여 병원 기타 감정유치장 소정의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여 감정을 하도록 한다. ③감정유치장의 정한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감정유치의 처분을 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관에게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37조(영장의 청구)의 규정은 감정처분허가장, 감정유치 및 감정유치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의 청구에 준용한다.</p> <p>제190조(감정유치 시 유의사항) 감정유치장에 의해 피의자를 병원 기타의 장소에 유치한 경우에는 당해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와 긴밀히 연락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간수자를 두는 등 피의자의 자살, 도망 기타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91조(감정인에 대한 편의제공) 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하거나 피의자 기타 관계자의 신문에 입회하도록 하거나 이들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92조(감정인) ①감정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 장소, 경과 및 결과를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재한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의 경과 및 결과가 간단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구술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있고 이 경우 그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의 감정서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③감정서의 기재가 불명하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 감정서에 보완할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	--

<p>제10장 송치 및 송부</p> <p>제193조(송치 및 송부의 지휘)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송치 또는 송부의 수속을 밟을 때에는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p> <p>제194조(관련사건의 송치 및 송부) 제11장(소년사건에 관한 특칙)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사건은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송치 또는 송부한다.</p> <p>제195조(송치서 및 송부서) 사건을 송치 또는 송부할 때에는 범죄의 사건 및 정상 등에 관한 의견을 붙인 송치서 또는 송부서를 작성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한다.</p> <p>제196조(송치 또는 송부 후의 수사와 추송) ①경찰관은 사건의 송치 또는 송부 후에도 그 사건에 주의하여 새로운 증거수집 및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의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건의 송치 또는 송부 후에 새로운 증거물 기타 자료를 입수한 때에는 신속히 추송하여야 한다.</p> <p>제197조(여죄의 추송치(부)) 여죄의 추송 또는 송부 후에 해당 사건에 관한 피의자에 관하여 여죄를 발견한 때에는 검찰관에게 연락하고 신속히 수사하여 추송치(부)하여야 한다.</p> <p>제198조(미죄처분이 가능한 경우)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범죄사실이 극히 경미하고 검찰관으로부터 송치의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고 사전에 지정된 경우에는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99조(미죄처분의 보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그 처리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매일 일괄하여 미죄처분사건보고서(별지양식 제19호)에 의해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00조(미죄처분 시의 처리) 제198조(미죄처분이 가능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p> <p>ㄱ. 피의자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하고 장래에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경고할 것</p> <p>ㄴ. 친권자, 고용주 기타 피의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자를 대신할 자를 출석 요구하여 장래에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를 주고 각서를 징구할 것</p> <p>ㄷ.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사죄 기타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것</p>	<p>제201(범죄사건처리부)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부한 때에는 장관이 정하는 양식의 범죄사건처리부에 의하여 그 경과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p> <p>제11장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p> <p>제202조 소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의한다.</p> <p>제203조(소년사건수사의 기준) 소년사건수사에 관하여 가정재판소에서의 심판 그 밖의 처리를 염두해 두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자세로 임하여 한다.</p> <p>제204조(소년의 특성고려) 소년사건을 사건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타인에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문의 언동에 주의하는 등 온경과 이해를 가지고 임하여 그 심정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05조(범죄원인 등의 조사)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동기 및 해당 소년의 성격, 행상, 경력, 교육정도, 환경, 가정상황, 교유관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p> <p>제206조(관계기관과의 연락)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가정재판소, 아동상담소, 학교 그 밖의 관계기관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야 한다.</p> <p>제207조(보호자 등과의 연락) 소년 피의자의 소환하거나 신문을 할 때에는 해당 소년이 보호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해당 소년의 복지상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208조(신병구속 관련 주의) 소년피의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신병구속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체포, 연행 또는 호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p> <p>제209조(보도상 주의) 소년범죄에 관하여 신문 기타 보도기관에 발표하는 경우에도 당해 소년의 성명 또는 주거를 고지하지 말고 그 밖에 당해 소년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10조(소년사건 송치 및 송부처) ①소년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그 범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송치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②송치 또는 송부 시 그 소년피의자에 대하여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검찰관에게 송치 또는 송부한다.</p>
---	--

<p>제211조(관련사건의 송치 및 송부) ①다른 피의자 사건과 관련된 소년사건의 송치 또는 송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p> <p>ㄱ. 성년사건과 관련된 소년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각각의 기록을 송치 또는 송부할 것. 다만, 소년사건에 관련되는 서류가 성년사건에 대하여도 필요한 때에는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할 것</p> <p>ㄴ. 수개의 소년사건이 관련되고 이를 검찰관에게 송치 또는 송부할 때에는 각각의 기록으로 할 필요는 없음</p> <p>ㄷ. 소년사건이 성년사건과 관련되거나 수개의 소년사건과 관련되어 한쪽의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부 또는 송치하고 다른 한쪽의 사건을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쪽의 사건에 관한 서류가 다른 한쪽의 사건에서도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에게 송치 또는 송부하는 사건의 기록에 다른 한쪽의 사건과 관련되는 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할 것</p> <p>제212조(공통증거물의 취급) 소년사건이 성년사건과 관련되거나 수개의 소년사건과 관련되어 각각의 사건으로 송치 또는 송부하는 경우 공통의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p> <p>ㄱ. 소년사건과 성년사건이 관련된 경우 성년사건에 증거물을 첨부할 것. 이 경우 소년사건의 기록에 이 취지를 기재할 것. 다만, 소년사건만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년사건에 증거물을 첨부할 것.</p> <p>ㄴ. 수개의 소년사건만 관련된 경우 검찰관에게 송치 또는 송부하는 증거물에 첨부할 것. 이 경우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사건의 기록에 그 취지를 기재할 것</p> <p>제213조(송치서류 및 송부서류) 소년사건을 송치 또는 송부할 때에는 소년사건송치서(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때에는 별지양식 제20호 단, 해당 도도부현경찰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하, 「관할지방검찰청」이라 한다.)의 검사정이 소년사건의 교통법령위반사건의 수사서류의 양식에 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도도부현경찰의 경찰본부장이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이하 「관할가정재판소」라 한다.)와 협의하여 그 특례에 준하는 별도의 양식을 정한 때에는 그 양식) 또는 소년사건송부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신상조사표(별지양식 제21호) 기타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p>	<p>제214조(경미사건의 처리) ①수사한 소년사건에 관하여 그 사실이 매우 경미하고 범죄원인과 동기, 해당 소년의 성격, 행상, 가정상황 및 환경 등으로 볼 때 재범가능성이 없고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며 검찰관 또는 가정재판소로부터 사건에 지정된 경우에는 피의소년 마다 소년사건간이송치서 및 수사보고서(가정재판송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양식 제22호. 단,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정이 소녀의 교통법령위반사건의 수사서류의 양식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도도부현경찰의 경찰본부장이 관할가정재판소와 협의하여 그 특례에 준하는 별도의 양식을 정한 때에는 그 양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신상조사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매일 일괄하여 검찰관 또는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의 경우에는 제200조(미죄처분시의 처리)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p> <p>제215조(촉범소년과 우범소년) 수사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경찰활동규칙(2002년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20호) 제3장이 규정에 의한다.</p> <p>ㄱ. 피의자가 소년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소년임이 명백해진 경우</p> <p>ㄴ. 피의자가 죄를 범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히 졌고 피의자가 소년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년인 경우</p> <p>제216조 삭제</p> <p>제217조 삭제</p> <p>제12장 교통법령위반사건에 관한 특칙</p> <p>제218조(준거규정) 도로교통법(1960년 법률 제105호)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이하 「교통법령」이라 한다.)의 위반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것 외에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른다.</p> <p>제219조(신병구속에 관한 주의) 교통법령위반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사안의 특성을 감안하여 범죄사실을 현인(現認 : 현장에서 확인)한 경우에도 도망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의자를 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20조(진술조서의 기재사항) 교통법령위반사건피의자의 진술조서에는 대체로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범죄사실현인보고서기계의 범죄에 관하여 자백하거나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다툼이 없는 경우 제1호의 사항 및 그 자백으로 족하다.</p>
--	--

<p>ㄱ. 본적, 주거, 직업, 성명, 생년월일, 연령 및 출생지(피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상호, 주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과 주거, 피의자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주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 관리인 또는 주간부의 성명과 주소)</p> <p>ㄴ. 교통사범의 전력</p> <p>ㄷ. 학력, 경력, 자산, 가정 및 생활환경</p> <p>ㄹ. 범죄의 연월일시, 장소, 방법, 동기, 범행상황</p> <p>제221조(소년의 교통법령위반사건의 송치) 소년교통법령위반사건의 송치는 교통법령위반소년사건송치서(가정재판소 송치는 별지양식 제23호. 단,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소년의 교통법령위반사건의 수사서류의 양식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경우 해당 도도부현경찰의 경찰본부장이 관할가정재판소와 협의하여 그 특례에 준하여 별도의 양식을 정한 때에는 그 양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상조사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단, 범죄사실, 범죄원인과 동기, 해당 소년의 성격, 행상 및 환경, 가정환경 등으로부터 특히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222조(교통법령위반사건부) 교통법령위반사건은 범죄사건수리부 및 범죄사건처리부를 갈음하여 장관이 정한 양식의 교통법령위반사건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한 제19조(수사지휘) 제1항 및 제193조(송치 및 송부의 지휘)에 규정하는 지휘책임과 사건의 송치 또는 송부 기타 경과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p> <p>제13장 국제범죄에 관한 특칙</p> <p>제223조(준거규정) 국제범죄(외국인관련범죄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법, 대공사관관련범죄 그 외 외국에 관한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사에 관하여 조약, 협약, 그 외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본 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른다.</p> <p>제224조(국제범죄의 준수) 국제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법규와 국제법상의 관습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225조(국제범죄의 수사착수 등) ①국제범죄 중 중요한 범죄에 관하여는 미리 경찰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한 후 신속히 경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경찰본부장은 국제범죄 수사관련 국외의 수사기관 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에 대하여 협력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청을 경유하여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226조(대공사 등에 관한 특칙) ①국제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다음에 규정하는 자의 신체, 명예, 문서 그 외의 불가침 등의 특권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ㄱ. 대공사(大公使), 대공사관원 또는 그 가족</p> <p>ㄴ. 그 밖의 외교특권을 가진 자</p> <p>②전항에 규정하는 자의 사용인을 체포하거나 신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 그 밖의 긴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경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피의자가 외교특권을 가진 자인지 그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p> <p>제227조(대공사관 등예의 출입) 대공사관과 대공사관원의 주거, 별장 또는 그 숙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해당 대공사 또는 대공사관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를 추적 중 그 자가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공사, 대공사관원 또는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 수색할 수 있다.</p> <p>제228조(외국군함예의 출입) ①외국군함에 대하여는 해당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군함에 들어갔을 때에는 신속히 경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당해 군함의 함장에 대하여 그 자의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p>
---	--

<p>제229조(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 또는 군속을 떠나 우리나라의 영해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경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p> <p>제230조(영사상의 특권 등에 관한 특칙) ①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 자의 신체불가침특권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ㄱ. 본무영사관(本務領事官)(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며 그 자의 대하여 재판관이 미리 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본무영사관 및 제3항이 규정하는 영사관은 제외한다.)</p> <p>ㄴ. 영사전서사(領事傳書使)(당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의 영사전서사에 한한다.)</p> <p>②다음에 규정된 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그 자가 영사임무의 수행을 함에 있어서 행한 행위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에는 그 자가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ㄱ. 영사관(領事官)(다음 항에 규정된 영사관은 제외)</p> <p>ㄴ. 영사기관(총영사관, 영사관, 부영사관 또는 대리영사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기술직원(우리나라 국민인 자 또는 우리나라에 통상 거주하는 자는 제외한다.)</p> <p>③전2항의 규정은 영사관이며 우리나라 국민이기도 한 자 또는 우리나라에서 통상거주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그 자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한 공적인 행위와 관련된 수사에 준용한다.</p> <p>④제226조(대공사 등에 관한 특칙) 제3항의 규정은 전3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중 「외교특권」은 「영사상의 특권 또는 면제」로 대신한다.</p> <p>⑤영사기관의 구성원 또는 영사전서사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경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인 체포 그 밖에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특권과 면제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⑥본무영사관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의 공관에 관하여는 당해 영사기관의 장 또는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영사기관의 공관 또는 영사관(官)의 주거에서 수사를 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경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p> <p>⑧영사기관의 공문서(명예영사관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의 공문서로 다른 문서와 구별하여 보관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제외한다.)관련 수사에 대하여는 문서의 불가침의 특권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231조(외국선박내의 범죄) 우리나라의 영해에 있는 외국선박내에 발생한 범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하여야 한다.</p> <p>ㄱ. 우리나라의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p> <p>ㄴ. 승무원 이외의 자나 우리나라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p> <p>ㄷ.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p> <p>제232조(외국인이 신문 및 신병의 구속에 관한 주의) ①외국인을 신문하거나 신병을 구속하는 때에는 언어, 풍속, 관습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당해 외국인에 관계되는 형사수속과 관련 우리나라의 형사수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적절한 기하는 등에 의하여 필요 없는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②외국인의 신병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p> <p>ㄱ. 당해 영사기관에 신병이 구속된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p> <p>ㄴ. 당해 영사기관에 우리나라의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신서(稟紙)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p> <p>③전항 제1호에 규정된 요청이 있거나 조약 그 밖의 국제약속에 의하여 피의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영사기관에 대하여 동항 규정하는 자의 신병 구속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전항의 통보를 한 때에는 그 일자와 당해 통보의 상대방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p>
--	--

<p>제233조(통역의 촉탁) ①외국인이어서 일본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는 경찰관 이외의 경찰관이 신문 그 밖에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한다. 다만, 현행법체포, 긴급체포 그 밖의 즉시 통역인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신문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p> <p>ㄱ. 통역인이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자와 친족 그 밖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신청하게 하여 신문의 적정성을 기할 것</p> <p>ㄴ. 신문할 때의 질문방법과 내용연구에 의해 통역의 원활 및 적정을 도모할 것</p> <p>ㄷ. 통역인으로 하여금 비밀을 엄수하게 하고 수사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제234조(진술조서의 기재사항) 국제범죄의 피의자 진술조서에는 제178조(진술조서의 기재사항)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p> <p>ㄱ. 국적 및 본국에 있어서의 주거</p> <p>ㄴ.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그 밖의 신분의 증명에 관한 서류의 유무(외국인등록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등록 연월일, 등록시점촌, 등록번호 등)</p> <p>ㄷ. 외국에 있어서의 전과의 유무</p> <p>ㄹ. 우리나라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 및 목적</p> <p>ㅁ. 본국에서 퇴거한 시기</p> <p>ㅂ. 가족의 유무 및 그 주거</p> <p>제235조(조서 등의 작성) ①일본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신문하거나 제130조(사법경찰원의 조치)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일본어의 진술조서 또는 번역녹취서를 작성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의 진술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외국인이 구술로써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하려 하는 경우에는 일본어가 통하지 아니할 때의 고소, 고발 또는 자수의 조서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제236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인에 대하여 체포장 그 밖의 영장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외국인으로부터 차압한 물건 또는 그 승낙을 얻어 영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품목록교부서를 교부할 때에는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이해하는 언어에 통하는 경찰관이 이를 행하거나 제233조(번역의 촉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인으로 하여금 번역하게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237조(도망범죄인인도법에 근거한 처분) 구급허가증 그 밖의 도망범죄인인도법(1953년 법률 제68호)에 근거한 영장에 의하여 도망범죄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동경고등검찰청 검찰관에 인치하여야 한다.</p> <p>제238조(통역인의 파악 등)경찰본부장은 평소 수사상 필요에 따라 통역인으로 하여금 신속, 확실하게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인으로서의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의 파악에 노력하고 통역인에게 형사수속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4장 군중범죄에 관한 특칙</p> <p>제239조(준거규정) 군중범죄수사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의한다.</p> <p>제240조(심적대비) 군중범죄수사에 대하여는 항상 일반사회의 정세 및 군중범죄의 주체가 될 우려가 있는 단체, 집단 등의 실태와 그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중범죄수사가 적확하게 행하여지도록 심적대비를 하여야 한다.</p> <p>제241조(군중범죄수사의 중점) 군중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실행행위자만 그치지 말고 주모자, 모의참여자 그 밖의 사건의 배후에 있는 공범관계자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42조(현장에 있어서의 체포) 군중범죄의 현장에서 그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세력, 정세의 추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체포의 시기, 방법과 범위를 그트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휘관의 통제하에 행하여야 한다.</p> <p>제243조(감시활동의 주의) 군중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행상황 그 밖의 현장의 상황을 명백히 하고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하는 등 증거의 수집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p>
--	--

<p>제244조(체포시의 주의) ①군중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 있어서 체포한 경찰관은 각각 자기가 체포한 피의자에 관하여 그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범죄사실의 개요, 체포시간, 장소와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어 사후의 신문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직후에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과 함께 촬영해 두는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 한다. ③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당해 피의자와 관계가 있는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피의자와 압수물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들을 함께 촬영하는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 한다.</p> <p>제245조(통보 등의 방지) 군중범죄의 피의자를 다수 동시에 체포한 경우에 있어서 통보, 탈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분산유치 기타의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48조(피의자의 신문) 군중범죄이 피의자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특히 조사하는 경찰관 상호간에 연락을 긴밀하여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5장 폭력단범죄에 관한 특칙</p> <p>제247조(준거규정) 폭력단범죄수사에 대하여는 이장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의한다.</p> <p>제248조(심적대비) ①폭력단에 대하여는 평소 그 조직의 실태와 동향과 그 활동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폭력단범죄의 수사가 적확히 행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폭력단범죄수사에 대하여는 폭력단대책에 관련된다는 점을 염두 해두고 이에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임하여야 한다.</p> <p>제249조(폭력단범죄수사의 중점) 폭력단범죄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실행해위자만 그치지 말고 폭력단 두목 그 외 간부 등의 당해사건에 관여의 유무에 관하여도 확실히 수사하고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50조(자료의 수집관리) 폭력단의 시찰내담 그 외 폭력단범죄의 수사에 의한 유무형의 자료수집과 관리하는 조직적으로 하여야 한다.</p>	<p>제251조(진술조서의 기재사항) ①폭력단범죄의 피의자진술조서에는 제178조(진술조서의 기재사항)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피의자에 관련된 폭력단 명칭, 조직 및 활동의 실태 ㄴ. 피의자가 당해폭력단의 구성원인 때에는 당해폭력단에 있어서의 지위 그 밖에 피의자와 당해폭력단과의 관계와 당해폭력단에 관련된 피의자의 활동실태 ㄷ. 당해범죄의 당해폭력단에 관련된 조직적 배경 <p>②폭력단범죄의 참고인진술조서에는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외에 당해폭력단의 활동실태, 당해범죄의 당해폭력에 관련된 조직적 배경 등을 가능한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52조(부당한 행위의 보고) 폭력단의 시찰내담 그 외에 폭력단범죄수사의 결과,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졌을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그 외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그 사실을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6조 보석자 등의 시찰</p> <p>제253조(보석자 등의 시찰) ①경찰서장은 검찰관으로부터 그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보석되거나 구류의 집행을 정지한 자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자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그 밖의 적당한 경찰관을 지정하여 그 행동을 시찰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시찰은 적어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p> <p>제254조(사고통지) 전조에 규정된 시찰을 함에 있어서 그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전조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한 검찰관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충분히 있을 때 ㄴ. 죄증을 인멸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충분히 있을 때 ㄷ. 피해자 기타 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 또는 그 친족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고 이들에게 공포를 주는 행위를 한 때 ㄹ. 주거, 여행, 치료 등에 관한 제한 그 밖의 보석이나 구류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ㅁ. 기타 특히 검찰관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을 때
--	---

<p>제255조(시찰상의 주의) 제253조(보석자 등의 시찰)에 규정하는 시찰은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시찰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명예와 신용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256조(시찰부) 제253조(보석자 등의 시찰)에 규정하는 시찰을 한 때에는 시찰부(별지양식 제24호)에 의하여 이것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p> <p>제7장 영장의 집행</p> <p>제257조 ①검찰관으로부터 구인장, 구류장, 감호장, 차압장, 수색장, 감정유치장, 수용자 또는 제수용장 그 밖의 영장 집행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이유로 전항에 규정된 집행을 지연하는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영장집행을 지휘한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58조(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집행) ①증인에 대하여 구인장의 집행은 당해영장에 지정된 일시에 인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인장의 집행을 받은 증인을 호송하는 도중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일시적으로 최인접 경찰서의 보호실 등에 유치할 수 있다. ③전항의 호송 또는 유치중에 있어서 증인이 도망을 기도하거나 폭행, 자살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수갑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p> <p>제259조(유효기간 내에 집행불능의 경우) 검찰관으로부터 구인장, 구류장, 차압장, 수색장 또는 감정유치장의 집행의 지휘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지휘한 검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제260조(구인장집행이 부적당한 경우) 검찰관으로부터 구인장, 구류장 또는 감정유치장집행의 지휘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집행을 받는 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의 의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이거나 그 밖의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히 지휘를 한 검찰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지휘를</p> <p>제261조(수용장의 발부와 집행)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경찰관이 수용장(형소법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발부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집행한 때에는 그 원본을 지휘한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받아야 한다.</p>	<p>제262조(수용장집행불능의 경우) 검찰관으로부터 수용장집행의 지휘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이를 집행하지 못한 채 3개월이 경과하고도 당분간 집행할 전망이 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휘한 검찰관에게 그 이유와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보고하고 수용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경찰관이 발부한 수용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3개월이 경과하고도 당분간 집행할 전망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263조(수용장집행이 부적당한 경우) 수용장에 지정된 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거나 형소법 제482조 각 호 어느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를 지휘한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p> <p>제264조(보석취소 등의 경우의 준용) 제257조(검찰관의 지휘에 의한 집행), 제259조(유효기간내에 집행불능의 경우) 및 제260조(구인장 등 집행부적의 경우)의 규정은 검찰관으로부터 형소법 제98조(동법 제167조의 2 및 동법 제343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석 또는 구류집행정지 취소의 결정, 구류집행정지의 기간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만료의 경우에도 수용의 지휘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265조(재판관으로부터 집행의 지휘를 받은 경우) 제257조(검찰관의 지휘에 의한 집행), 제259조(구인장 등 집행 부적의 경우)의 규정은 형소법 제70조 제1항 단서 또는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 또는 재판관으로부터 구인장, 구류장, 차압장, 수색장 또는 감정유치장 집행의 지휘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p> <p>제266조(차압장 등 집행의 경우의 입회) 경찰관은 검찰관, 재판장 또는 재판관의 지휘를 받아 차압장 또는 수색장을 집행하는 경우 다른 경찰관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67조(소년에 대한 동행장의 집행) 제257조(검찰관의 지휘에 의한 집행), 제259조(유효기간내에 집행불능의 경우) 및 제260조(구인장 등 집행부적의 경우)의 규정은 소년법 제13조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재판소로부터 동행장 집행의 지휘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들의 규정 중 「검찰관」은 「가정재판소」로 대신한다.</p>
---	---

<p>제268조(인지장의 집행) 제257조(검찰관의 지휘에 의한 집행) 제259조(유효기간내에 집행불능의 경우) 및 제260조(구인장 등 집행부적의 경우)의 규정은 갱생보호법(2007년 법률 제88호) 제63조, 매춘방지법(1956년 법률 제118호) 제2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인지장 집행에 있어서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7조 및 제259조 중 「검찰관」은 「지방갱생보호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지휘」는 「촉탁」으로, 제260조 중 「검찰관」은 「지방갱생보호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의 지휘」는 「-의 촉탁」으로, 「지휘를 한」은 「촉탁을 한」으로, 「보고하여 지휘를 받지 아니하면」은 「통지하지 아니하면」으로 대신한다.</p> <p>제269조(영장집행시 주의) 구인장 그 외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행사를 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부당히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18장 잡칙</p> <p>제270조(다른 도도부현경찰의 관할 구역에서의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은 다른 도도부현경찰의 관할 구역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체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경찰에 인계하여야 한다.</p> <p>제271조(미검거사건의 계속수사) 미검거사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수사하면서 그 수사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해두어야 한다.</p> <p>제272조(서류의 수리)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난의 기타 적당한 개소에 수리의 연월일을 기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각을 기입해두어야 한다.</p> <p>제273조(수사서류의 복사)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사서류의 복사를 하여 보존해두어야 한다. 제274조(수사사고부) 체포자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강제처분에 관한 사고 그 밖의 수사에 관한 분쟁 등이 있는 때에는 수사사고부(별지양식 제25조)에 의하여 그 경위와 조치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p> <p>제275조(도경찰의 특례) 도(道)경찰본부장은 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방면본부장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p> <p>부칙(2008년 11월 10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24호)</p> <p>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11조의 개정규정은 소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8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일(2008년 12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p>	
--	--

책임연구보고서 2009-23

한일 범죄수사규칙(범) 비교 연구

발행일 : 2009년 12월 24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